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198-0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30주년, 선택의정서 10주년 기념 토론회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일 시 2009. 12. 2(수) 14:00~18:00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 일시 : 2009년 12월 2일 (수) 오후 2시~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시 간		내 용	
14:00~14:10	10분	인사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회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4:10~18:00	40분	주제발표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과 여성인권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2 CEDAW와 국내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	김선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분	휴 식	
	120분	지정 토론	
		CEDAW 협약 이행 관련 각 부문 현황,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등	차인순(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민기(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선혜(여성부 교류협력과장) 곽수경(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장) 김경윤(노동부 여성고용과장) 박숙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60분	종합토론	참석자 전체

인 사 말 씀

1979년 제정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현재 186개국이 비준·가입하였으며, 여성의 인권보장과 차별해소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한 여성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84. 12. 18. 동 협약에 가입하여 1985. 1. 26.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법제도와 실제 관행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와 민단단체의 노력을 촉진하게 하였으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입법 조치와 함께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여성 인권 개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1999년 유엔은 권리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직접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여성인권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유엔에서 동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제정된 지 각 30주년과 1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 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우리 위원회가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멀리서 와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목 차

■ 발표문

- 〈주제발표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여성인권 1
신 혜 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주제발표 2〉 CEDAW와 국내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 45
김 선 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문

- 토론 1.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61
차 인 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 토론 2.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재판 규범성 65
김 민 기 (서강고등법원 판사)
- 토론 3.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 성과 및 과제 77
강 선 혜 (여성부 교류협력과장)
- 토론 4.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 89
곽 수 경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장)
- 토론 5.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91
김 경 윤 (노동부 여성고용과장)
- 토론 6.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 107
박 숙 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 부록

부록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15
부록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129
부록 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37
부록 4. 대한민국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17



UN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과 여성인권

신 혜 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1

주제발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여성인권

신 혜 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¹⁾)

I. 서론

금년 2009년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 지 30주년, 협약 선택의정서가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국제 인권법으로서 1979년 제정되어 지난 30년간 여성인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정 초기에는 인권협약으로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급속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북경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비준과 이행이 거듭 강조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이 협약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된 것이다. 또한 협약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설립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협약이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협약 선택의정서가 1999년에 추가로 제정됨으로써 여성인권보장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실질적 운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²⁾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람들, 즉 여성 자신들과 법 집행의 당사자들인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들이 대부분 협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인권 보호 장치로서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중요성과

1) 필자는 2001. 1. 1.부터 2008. 12. 31.까지 만 8년간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20회의 위원회 정규 회의에서 180개의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11건의 개인진정을 심의하였다.

2) 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시행한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CEDAW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약 5%로 나타났다.

내용을 짚어보고 동시에 그 한계와 제약도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국내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도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국제인권법 체계 속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국제인권법 체제와 여성인권

1. 핵심 국제인권조약과 여성인권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제장치로 국제인권조약 시스템이 있다.³⁾ 지금까지 제정된 국제인권협약은 무수히 많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요 인권협약은 9개를 꼽는다(표 1 참조). 이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명문화한 인권조약으로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국제조약이다.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은 모두 성, 인종, 언어,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별도로 여성의 평등권을 명시하는 조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이 각각 해당 분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나머지 7개의 주요 인권협약은 부문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된 순서대로 인종, 고문,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강제실종에 관한 것이다. 물론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 이들 7개 부문의 인권을 보장하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권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다시 더 상세하게 각각의 부문에 대한 특별조약이 제정된 셈이다.

3) 국제인권조약은 유엔에서 제정하는 것 이외에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대륙별, 또는 남아시아의 인신 매매방지협약같이 소지역별로도 제정된다.

<표 1> 9대 핵심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조약 (영문 명칭)	제정/발효 연도	한국 비준	가입국 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1976	1990	16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1976	1990	165
인종차별철폐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1969	1979	173
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1981	1984	186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1987	1995	146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1990	1991	19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1990/2003	미가입	42
장애인권리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2008	2008	70
강제실종자보호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People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2006/ -	미가입	15

출처: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웹사이트의 정보를 재구성. <http://www2.ohchr.org/english/law/>

* 가입국 수는 2009. 9. 30. 기준.

이중 강제실종자보호협약은 아직 가입국 수가 부족하여 발효가 되지 않아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요 인권협약은 8개이다.⁴⁾ 인권조약 제정연도와 발효연도를 비교해 보면 어떤 조약은 발효하는데 대단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또 어떤 조약은 제정 다음 해에 발효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합의하여 제정하였지만, 발효에 필요한 20개국의 가입국을 확보하는데 걸린 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예를

4) 각 인권협약의 내용, 위원회 등에 관한 정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ohchr.org/EN/HRBodies/Pages/HumanRightsBodies.aspx>. 가입국 현황에 대해서는 <http://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4&Lang=en> 을 볼 것.

들면 아동권리협약은 발효되는데 1년 밖에 안 걸린 반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13년이나 소요되었다.⁵⁾ 물론 조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조약의 내용을 다 이행하는지의 여부는 별개 문제이다. 각 인권조약에의 한국 가입연도를 비교해 보면 대강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여성은 세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집단이나 다 소속되어 있다. 여성협약보다 먼저 제정된 핵심적 국제인권협약인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두 여성의 평등권을 명시하는 조항을 각각 제3조에 포함하고 있다. 또 인종차별철폐협약도 그 전문에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별도로 제정되게 된 것이다. 여성협약의 제정 이후에 새로 제정된 다른 분야의 국제인권협약도 대부분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전문과 제1조에,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제2조에 성에 근거한 차별을 두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은 몇 년간의 열띤 논의 끝에 여러 조항에 성평등 원칙이 천명되었으면서 동시에 제6조에 장애여성 조항이 포함되었다.⁶⁾

여성인권의 문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포괄적,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타 핵심 인권조약에도 기본적으로 여성의 평등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약에 의거해서도 각 조약이 취급하는 분야의 여성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학자들과 여성인권운동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제인권 보호 장치가 여성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⁷⁾ 국제인권조약이 여성의 인권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조약에

5)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국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이며, 수입국은 별로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6)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로 장애여성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제안에 의한 것이다. 한국의 장애여성단체 대표들의 노력이 특히 지대했다. EU는 별도의 장애여성조항을 두는 것을 반대하고, 각 조항에 장애여성의 문제가 포함되어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필자는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별도 조항과 주류화 둘 다를 목표로 하는 twin-track approach를 주장하였다. 주류화만 피하고 별도의 장애여성 조항이 없을 경우 그동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노력하여 강화되어 온 각국의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여성장애인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여 EU가 결국 별도조항을 두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7) Hilary Charlesworth, "Inside/Outside: Women and International Law,"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Feminist International Legal Studies and Thirty Years of the CEDAW Convention, Asi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1-2 August 2009, Tokyo University.

대한 기존의 해석과 적용을 성 인지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여성차별철폐협약 이외의 다른 인권조약에도 성주류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각 인권조약에 따른 보고서를 심의할 때 여성인권의 문제가 부분적으로라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심의할 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음핵제거, ‘명예살인’ 등의 여성폭력문제가 제기되고 해당 국가에 대한 권고문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여성인권의 문제가 사회권규약이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도 논의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제2차 사회권규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2001년의 심의에서는 여성부의 불충분한 자원문제, 법제정시 성인지적 관점 도입, 아들선호사상과 여아낙태 같은 전통적 관습 등이 문제시된 바 있다.⁸⁾ 또한 최근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심의에서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나 경제활동의 미비, 가정폭력 처벌문제, 아내강간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권고에 포함되었다.⁹⁾

2. 인권조약 선택의정서와 여성인권보호

인권보호의 또 하나의 장치로 선택의정서가 있다. 선택의정서는 본 조약에 추가하여 제정되는 또 하나의 조약으로, 조약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때 제정한다. 물론 본 조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조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장치는 조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개인이 조약 기구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중대한 또는 조직적인 침해의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인권조약의 선택의정서 관련 사항은 <표 2>와 같다. 자유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은 각각 선택의정서가 2개이며, 반면에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나 강제실종자보호협약은 선택의정서가 없다.

8)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2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제26차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 E/C.12/1/Add.59, 21 May 2001.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scr/sessions.htm>에서 treaty bodies database를 클릭하여 찾거나, 직접 <http://tb.ohchr.org/default.aspx> 에서 조약과 국가명을 입력하면 해당 조약감시기구가 채택한 모든 권고문을 찾아볼 수 있다.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제43차 위원회 회기 중인 올해 2009. 11. 10~11.에 예정되어 있다.

9)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제88차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CCPR/C/KOR/CO/3, 28 November 2006. 한국정부의 보고서, NGO보고서, 위원회의 권고 등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hrcs88.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 주요 인권조약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 사항

인권조약 선택의정서	제정/발효 /한국가입연도	가입국수*	선택의정서 상 가능한 조치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2008/미발효/미가입	아직 없음	개인진정 접수, 임시조치, 중재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	1966 / 1976 / 1990	113	개인진정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1989 / 1991 /미가입	71	사형금지, 사형제폐지 개인진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1999 / 2000 / 2006	98	개인진정, 임시조치, 조사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2002 / 2006 /미가입	50	개인진정, 조사, 국가 간 진정 심의, 구금시설 정기방문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 / 2002 / 2004	130	18세미만 아동 징집금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 / 2002 / 2004	132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 금지, 처벌, 대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6 / 2008 /미가입	45	개인진정, 조사

출처: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웹사이트의 정보를 재구성. <http://www2.ohchr.org/english/law/>

* 가입국 수는 2009. 9. 30. 기준.

선택의정서를 이용해서 개인진정을 제기할 때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야 하는 점, 그리고 국내 구제절차를 다 소진한 후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 조약기구에서만 진정을 심의하게 되므로,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인권사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때는 어느 조약을 이용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진정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논의는 비공개와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유엔 총회에 내는 보고서와 유엔 웹사이트에 기재된다.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조약상의 국가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되기도 한다.

3. 이행 모니터링: 조약기구(treaty bodies)의 업무와 역할

각 인권조약에는 조약의 이행정도를 심의하기 위한 조약감시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위원 수는 <표 3>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이며,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표 3> 핵심 국제 인권조약기구의 위원수와 여성위원 비율

조약감시기구 (영문 명칭)	위원회 정원 수	여성위원 수 (비율)	보고서 제출 간격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8	3 (16.7%)	가입 후 2년 이내, 이 후 5년마다
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18	5 (27.8%)	가입 후 1년 이내, 이 후 요구시마다(대개 4 년 간격)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8	1 (5.6%)	가입 후 1년 이내, 이후 2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3	21 (91.3%)*	가입 후 1년 이내, 이후 4년마다, 또는 위원회요구 때마다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10	4 (40.0%)	가입 후 1년 이내, 이후 4년마다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8	9 (50.0%)	가입 후 2년 이내, 이 후 5년마다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ommittee on Migrant Workers)	10	3 (30.0%)	가입 후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12	5 (41.7%)	가입 후 2년 이내, 이후 4년마다
	계: 127	계: 51 (40.7%)	

출처: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웹사이트의 정보를 재구성. <http://www2.ohchr.org/english/law/> (2009. 9. 30. 검색)

* 2명의 남성위원을 제외하면 현재 활동 중인 여성위원 수는 20명이지만 원래 선출된 남아공의 위원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21명으로 계산하였다.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위원수의 절반을 선출한다. 위원의 자격은 공통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조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조약 가입국 정부가 자국의 후보를 내고, 가입국 정부대표들이 비밀투표로 과반수이상 지지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 회의에서 뽑지만, 일단 선출된 위원들은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개인전문가로서 활동하며, 출신 국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 독립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기도 한다. 현직 정부 관리, 특히 외교관이 위원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¹⁰⁾

각 조약기구는 조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조약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는 일, 개인진정이나 조사 등 선택의정서에 의한 활동을 한다. 위원회가 위원 출신국의 보고서나 개인진정을 심의할 때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위원은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이행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이나 건의를 일반권고의 형태로 채택할 수 있다. 일반권고는 조약의 내용을 당사국들이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조약에는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작동 중인 8개 조약기구의 총 위원 정원은 127명이다. 그중 여성은 51명, 40.1%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여성비율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가장 역사가 오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세 기구에서의 여성위원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남성위원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하는 반면, 타 조약기구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8개 위원회가 함께 모이는 위원회간 회의, 위원장 회의에서는 조약감시기구 공통의 과제를 논의해 왔다. 조약기구의 통합성을 높이는 문제도 과제 중 하나이다.¹¹⁾ 특히 200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유엔의 개혁과정에서 국제인권법 체제도 핵심 인권조약 간의 상호연

10)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경우 필자가 위원으로 재직했던 8년간의 동료위원 중 현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의 출신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필리핀, 동유럽에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남미의 자메이카, 멕시코 등이었다.

11) 지금까지 통합성 제고논의의 가장 큰 결실은 각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 중 모든 조약에 공통으로 적용될 common core document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 작은 예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심의 후 채택하는 권고문을 2008년부터 이전의 concluding comments에서 concluding observations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관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각 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보고서 심의, 권고 문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서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매년 계속하고 있다.

4.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의 책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면 조약 가입국은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받을 의무를 진다. 조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조약 가입 후 1~2년 이내에 1차 보고서, 이후 4~5년 주기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표 3> 참조). 보고서는 각 조약기구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가입국은 모든 국민들, 그중에서도 각 조약에 해당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조약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조인, 공무원 등 법 집행의 당사자들이 조약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Ⅲ.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여성인권

1.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원칙: 평등과 비차별

여성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 보는 대로 여성협약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평등권은 대단히 포괄적이다. 첫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경제, 사회, 문화적 권

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전 여성을 모두 포괄한다. 여자 어린이로부터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또 이주여성노동자나 인신매매 피해여성 등 협약 가입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이주여성도 포함된다. 셋째, 여성에 대한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 가입국의 국내법이 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모두 반영하여 직접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차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중요 요소

가.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또 “지체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협약 제2조). 이를 위해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이나 다른 국내법에 명시하고, “이러한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위해(to ensure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this principle)” 법적 조치나 다른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책임을 지고 있다(제2조, a항). 여성의 법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및 기타 조치 등과 함께 필요시 제재를 가할 것(제2조, b항), 여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구제기관을 설치할 것(제2조, c항), 형법상의 모든 차별적 조항을 폐지할 것(제2조, g항)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개인, 조직, 기업에 의한 차별도 국가책임

인권은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이나 법의 집행자, 공권력 등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여성협약도 물론 공권력이나 공공 기관이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조, d항). 그러나 여성협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by any person, organization or enterprise)” 여성차별도 폐지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제2조, e항).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에 의해,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개인, 조직,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제거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

다. 관습, 전통, 문화적 차별의 금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오랜 기간에 형성되어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적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 많다. 여성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에는 법률이나 규칙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관습과 관행(customs and practices)”도 포함된다. 일처다부제, 여성음핵절단, 여아낙태 등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문화적으로 지속되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관습과 관행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제2조, f항). 이와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어느 한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a).

많은 국가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할 때 히잡 착용 등 여성의 복장과 행동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가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인다.¹²⁾ 여성협약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억압하는 종교나 전통, 문화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녀의 고정적 성역할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전통적 사고로서, 성차별의 근본이고 여성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특히 매스미디어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광고에서의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을 없애기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12) 제1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제안한 “전통적 가치”에 관한 결의안이 2009. 10. 2.에 통과되었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이를 막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라. “잠정적 특별조치”의 필요성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제3조). 즉 여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실현할 종합적인 국가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조치들은 “잠정적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¹³⁾와는 다른 것이다. 여성협약은 제4조 1항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to accelerate *de facto* equality)”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잠정적 특별조치의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제4조, 1항).

많은 협약 가입국들이 “잠정적 특별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 사회정책을 잠정적 특별조치라고 열거하거나, 또는 잠정적 특별조치를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일반권고 25호를 채택하여, 협약 가입국이 잠정적 특별조치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국이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였다.¹⁴⁾ “잠정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는 점, “특별”의 뜻은 여성이 취약한 존재라서 특별한 조치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거나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조치라는 뜻이라는 것 등도 기술되어있다.

마. 모성 보호와 자녀양육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정적” 특별조치가 아닌, 항구적

13) temporary special measures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 법적 번역 용어는 “잠정적 특별조치”이나 개인적으로는 “한시적 특별조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협약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14)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1항 한시적 특별조치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25호.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on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adopted at the thirtieth session in 2004.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82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6개의 일반권고를 채택하였다. 일반권고 전체의 목록과 내용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comments.htm>에 수록되어 있다.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협약 제4조 2항은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제4조, 2항). 여기서 말하는 특별조치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상이한 조치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항구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특별조치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생리, 임신, 출산 등 모성과 관련된 여성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제11조), 보건(제12조) 분야에서의 조치까지를 포함하여, 여성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고 이는 차별이 아닌 것이다.

또한 여성협약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모성을 사회적 기능으로 이해할 것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남녀의 공동책임, 자녀이익의 우선시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b항).

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갖가지 형태의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협약은 전문이나 본문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강간이나 가정폭력, 성희롱 등의 여성폭력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명예살인’, 여성 성기절단, 신부살해, 염산투척, 여아낙태 등등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형태의 폭력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협약은 인신매매와 성매매로 인한 착취만을 금지(제6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협약이 기초되었던 1970년대 후반 당시에는 여성폭력의 문제가 아직 국제적 의제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89년 일반권고 12호, 1992년 일반권고 19호¹⁵⁾를 채택하고 “성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였다. 일반권고 19호는 협약의 각 조항과 여성폭력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입국 정부가 여성폭력의 현황, 대책, 효과 등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였다. 1993년 유엔 총회는 이 일반권고 제19호를 기초로 하여 여성폭력철폐선언을 채택하였다.¹⁶⁾ 따라서 협약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조항이 없지만 협약 가입국은 여성폭력의 실태 및 이를 근절

15)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2 제11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채택.

16)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48차 유엔 총회에서 1993. 12. 20. 채택. A/RES/48/104.

하기 위한 제반 조치에 대한 내용을 협약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되었다. 여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제2조, 3조, 4조, 5조, 6조, 10조, 11조, 12조, 14조, 16조 등 여러 조항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여성폭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가정폭력, 지역사회 내 폭력,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폭력의 발생빈도, 처벌에 있어 기소와 유죄판결의 비율, 아내강간의 처벌여부, 상담소와 쉼터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충분한지 등의 여부가 점검된다. 폭력예방조치로는 사회일반의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논의된다. 매스미디어에 투영되는 여성비하 이미지의 제거, 전통적 성역할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사. 분야별 여성의 평등권 보장

여성협약의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6조 이하를 규정짓는 공통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6조~16조까지는 각 분야별로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조항별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의한 착취 금지(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제6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중 가장 역사가 오랜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문제를 담고 있다. 인신매매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여 별도의 국제조약이 2000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 의정서’가 그것이다.¹⁷⁾ 이탈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일명 팔레르모(Palermo) 의정서라고도 한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주로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했는지의 여부 및 그 의정서가 규정하는

17)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유엔인권위원회가 2004년 신설한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매년 연례보고서와 현장방문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인진정 등을 접수하고 있다.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trafficking/index.htm>.

대로의 조치, 즉 인신매매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제 공조 여부 등이 주요한 점검사항이 된다.

성매매 문제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협약 제6조는 성매매 자체의 불법화 또는 합법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고, 성매매로 인한 여성의 ‘착취’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성매매 자체에 대한 각국의 제도는 다양하다. 스웨덴처럼 성매매업소는 물론 성구매자까지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를 허가제로 하여 합법화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여성인권보호에 더 효과적인지 앞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 다만 어느 제도를 채택하든지 성매매업소와 중간업자 등 착취자는 처벌하고, 성구매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성문화를 개선하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 철폐(제7조)

제7조는 여성의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부정책의 입안, 시행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모든 직급에의 공무담임권, 그리고 공공, 정치 분야에 관련된 비정부기구와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 하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여성비율, 고위직의 여성비율,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단위까지 모든 직급에서 여성이 얼마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가가 핵심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 공적 분야에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할당제 등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잠정적 특별조치를 시행하는지의 여부도 빈번히 제기된다.

3) 국제 분야에의 동등한 참여(제8조)

여성이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를 동등하게 대표할 기회, 국제조직의 업무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 중 여성비율, 고위 외교직중 여성비율, 국제기구에 진출한 사람 중 여성비율, 여성의 국제회의 참여기회 등이 주 내용이 된다.

4) 국적에 있어서의 평등권(제9조)

여성이 국적의 획득, 변경, 유지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생활 중 남편이 국적을 변경하더라도 아내의 국적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내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남편의 국적이 아내에게 강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녀의 국적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도 명시되어 있다.

한국은 1984년 가입 당시에는 불평등한 국적법으로 인해 이 조항을 유보하였으나, 1998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 유보를 철회하였다.

5)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제10조)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권은 고용이나 정치 분야의 평등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협약 제10조는 유치원부터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에 있어서 여성을 위해 남성과 동일한 직업보도, 교육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한 자격의 교원, 학교 설비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에도 동등한 여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제거, 이를 위해 남녀공학의 장려, 교과서 개정, 학교 프로그램 및 교수 방법의 개선, 장학금 수혜 및 성인교육, 문맹퇴치교육 등 계속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기회,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 또 가족계획을 포함,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여학생의 취학률이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또한 남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표현이 교과서에 여전히 남아있고, 성별 전공분야가 편중된 현상도 보편적이다. 여교사가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여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에 대한 방치, 여학생이 임신했을 경우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현실 등에 대한 개선조치와 함께 양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준다든지, 대학에서의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만 채용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6)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제11조)

경제적 자립은 여성이 평등해지기 위한 기초이다. 고용상의 평등을 규정한 제11조는 협약의 각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11조는 모든 인간의 불가분의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여성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고용(채용, 승진, 배치, 교육 및 연수, 퇴직)에의 동등한 기회와 더불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대우, 노동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은퇴, 실직, 병가, 장애 등의 판정, 유급 휴가 등 동일한 사회보장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결혼이나 모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방지는 평등한 노동권 보장에 매우 중요하다. 임신과 출산, 결혼으로 인한 해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함과 아울러 임신기간 중 여성이 유해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유급 출산휴가나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조치,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등 사회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문제와 관련된 보호입법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연구하여 필요시 개정, 폐기 또는 연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고용분야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여성의 취업률 제고, 성별 직업분리와 남녀 간의 임금격차 해소, 높은 비율의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성희롱 대책,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소 등이다.

7)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의 권리(제12조)

가족계획을 포함해서 모든 보건사업의 혜택을 받을 여성의 동등한 권리는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여성에게만 필요한 보건서비스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신 및 수유 기간 중의 적절한 영양 섭취, 임신과 해산, 산후조리기간 중 적절한 서비스 등이다.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여성들이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accessible), 의료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affordable)가 관건이다. 가장 기본적인 모성사망률로부터, AIDS, 가족계획 시행비율 및 피임이 여성만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문제, 여성에게 많은 유방암, 자궁암 등의 질환, 여학생 흡연율의 증가, 자살 등 정신건강의 문제, 높은 제왕절개 비율, 낮은 모유수유율,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낙태, 그리고 한국사례에서 제기된 줄기세포복제를 위한 난자채취의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이 조항에서 다루어진다.

8) 타 경제·사회생활에서의 여성차별 제거(제13조)

앞에서 다루어진 경제생활, 사회생활에서의 평등권에 덧붙여 기타 모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을 제13조가 다루고 있다. 특히 가족수당에의 권리, 은행대출, 저당 기타 재정보증 등에 있어서의 권리, 오락, 스포츠, 기타 모든 문화생활에의 동등한 권리를 예시하였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가족수당이나 은행대출 등은 여성이 독자적으로 수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아직도 일부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등 문화생활에서의 차별도 협약 가입국이 책임지고 폐지해야 될 분야이다.

9) 농촌여성의 권리(제14조)

여성협약의 조항 중 유일하게 대상을 명시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농촌여성에 관한 제14조이다. 농촌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족전체의 생존을 위해 농촌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자영경제활동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농촌여성에게도 이 협약이 적용되도록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농촌개발에의 참여와 수혜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특히 모든 개발계획의 입안과 시행에의 참여, 가족계획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서비스 시설의 이용,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 수혜, 모든 종류의 공식, 비공식 교육과 훈련 획득, 취업 등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한 자조집단과 협동조합의 조직,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농업용자와 대출, 영업, 토지 및

농지개혁, 토지재정착계획 등에 있어서 적합한 기술과 동등한 대우, 그리고 주택, 위생, 전기, 물, 교통, 통신 등 적절한 생활수준의 향유 등이 유념하여야 할 내용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아직도 농촌인구의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농촌여성도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의 여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0) 동등한 법적 권리(제15조)

제15조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민법상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이 그 능력을 행사하는데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특히 계약, 재산권 행사, 재판의 전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가 있는 어떤 계약이나 사적인 방법도 모두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동등한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11)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제16조)

협약 제16조는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권에 관한 조항으로, 특히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혼을 할 동일한 권리,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결혼기간 중과 이혼 시 동등한 권리와 책임,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 부모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동등한 권리, 친권·보호자권·입양 등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남편과 아내로서 가족의 성이나 직업을 선택할 동등한 개인적 권리, 재산의 소유, 획득, 관리, 처리, 향유, 처분에 있어서의 양 배우자의 동등한 권리 등이다. 덧붙여 아동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결혼 하한 연령을 법적으로 정할 것, 결혼신고를 의무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도 명시하였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6조는 여성들의 실질적 권리행사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우리나라

라는 가입 당시에는 차별적인 가족법 때문에 제16조의 여러 항을 유보하였었다. 그러나 1989년의 가족법 개정과 2005년의 호주제 폐지로 대부분의 유보조항이 철회되고, 현재는 가족성 선택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만 아직도 유보가 남아있다.¹⁸⁾

IV.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¹⁹⁾

여성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가 4년의 논의 끝에 1999년 제정되었고, 2000년 발효되었다.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 186개국 중 98개국(52%)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한국은 선택의정서에 2006. 10. 18. 가입하였고, 2007. 1. 18. 발효되었다.²⁰⁾ 이 장에서는 여성협약 선택의정서가 제공하는 여성인권 보장 장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선택의정서를 이용한 여성인권보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선택의정서가 보장하는 여성인권

가. 개인통보 절차(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

개인통보 절차는 개인이 국내에서 여성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국제적 인권보호 장치이다. 여성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게 되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개인진정을 접수하고 심리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의정서 제1조). 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

18)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되어있어 원칙적으로 부를 우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19) 선택의정서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은 신혜수(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2007. 1. 12.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을 볼 것.

20)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택의정서의 가입동의안이 통과된 날은 2006. 9. 29.이지만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한 날은 2006. 10. 18.이어서 이 날이 가입일이 되었다. 발효는 선택의정서 제16조 제2항에 의해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제2조). 이때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이 피진정인이 되어 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 받게 된다(제2조). 개인통보(진정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름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하고, 협약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제3조).

개인진정이 위원회의 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구제절차를 다 거치고 난 후에라야 가능하다(제4조 1항).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사적격성을 갖추지 못해 (inadmissible) 각하되게 된다. 첫째, 동일한 사안을 위원회가 심의하였거나 다른 국제인권기구가 심의하고 있는 중일 때; 둘째, 협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을 때; 셋째,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때; 넷째, 통보제출권의 남용인 경우; 다섯째,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이 의정서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이다. 다만 그 사실이 그 날자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때는 가능하다(제4조 2항).

또한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심사적격성 여부나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당사국에게 임시조치를 긴급히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2항). 위원회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결정을 내리고 당사국이 협약 위반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당사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제7조). 개인통보 절차에 의한 개인 진정에 관련된 자료는 모두 대외비로 하며,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의정서 제6조 1항, 제7조 2항). 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개인(들)과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모두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된 내용은 심리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 공개되며,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연례보고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나. 조사 절차(inquiry procedure)

협약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중대하거나 또는 조직적인 침해(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가 있을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또는 조직적인 침해가 있다는 “민을 만만 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위원회는 먼저 해당 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 정보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제8조 제1항).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과 다른 신빙성 있는 정보를 모두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위원 중 1명 이상을 지명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긴급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때 필요하면 해당국 정부의 동의하에 그 국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제8조 제2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입국비자승인이나 정부당국자와의 면담 등 조사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위원회가 다시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해당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와 견해, 권고안을 접수한지 6개월 이내에 의견을 다시 위원회에 제출한다(제8조 제4항). 이러한 모든 과정은 개인진정과 마찬가지로 대외비로 실시하며, 해당 당사국의 협조 하에 진행된다(제8조 제5항).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협약이행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제9조 제1항), 필요시에는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당사국에 문의할 수도 있다(제9조 제2항).

위원회의 조사는 국내 구제절차의 종료여부와 상관없이, 또 진정이 없이도 바로 위원회가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당사국은 선택의 정서에 가입할 때 조사절차와 관련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즉 가입시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현재 가입국 98개국 중 방글라데시, 벨리즈, 콜롬비아의 3개국이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고, 쿠바는 아직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서명 시에 이미 조사권 불인정 선언을 해 놓았다. 이러한 선언은 언제든지 당사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철회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2. 선택의정서 활용의 사례

가. 선택의정서의 효과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안 이루어진 경우, 피해여성 개인(들)이 국제적으로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은 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위원회의 심리결과 해당 당사국의 협약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당사국의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개인진정이 제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가입국 정부가 협약을 잘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나. 개인진정 사례들

개인진정은 선택의정서가 2000. 12. 22. 발효된 후 2003년 처음 접수되기 시작하여 2009. 8. 7.까지 총 22건이 접수, 등록되었다.²¹⁾ 그중 위원회의 심리가 확정되어 공표된 사례는 모두 8개국에서 13건이다.²²⁾ 심리가 끝난 13건 중 위원회가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판정한 것은 모두 4건이다.

협약위반으로 결정된 4건의 진정은 헝가리의 가정폭력사건과 로마(집시)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건,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사건 2건 등이다. 특히 헝가리의 2건 진정에 대해서는 헝가리 정부에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과 함께 여성전체를 위한 일반적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제기된 2건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둘 다 터키계 여성으로 모두 남편에 의해 살해되었고, 위원회는 오스트리아에 제도적

21) 아직도 선택의정서의 활용에 대한 여성계의 인식이 높지 않고, 또 국내 절차를 소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개인통보 접수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등록된 개인진정 22건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심의종결 13건(인용 4건, 기각 1건, 각하 8건), 조사중지 3건, 심의 진행 중 6건. <http://www2.ohchr.org/law/docs/CEDAWOPSURVEY09.xls> 에 수록되어 있다.

22) 심리가 확정된 13건의 진정은 독일(1건), 헝가리(2건), 네덜란드(2건), 오스트리아(2건), 스페인(1건), 터키(1건), 영국(2건), 프랑스(2건)이다. 13건에 대한 결정문 전문은 <http://www2.ohchr.org/english/law/jurisprudence.htm> 에 게재되어 있다. 처음 5건의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개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에 번역,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사례들은 2009년 1월 경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된 예정이다.

인 개선을 권고하였다.

13건 중 심사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위원회가 각하한 진정은 8건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제도(독일), 남동생에게 승계되는 귀족작위(스페인), 여교사에게 학교에서의 스킵 금지(터키),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게 국적불허(영국), 가정폭력 피해자인 파키스탄 여성의 망명신청불허(영국), 성매매목적으로 인신매매당한 중국인 여성의 망명신청불허(네덜란드), 가족성에서의 차별 2건(프랑스) 등이다. 그리고 협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여 기각된 1건은 출산휴가급여의 적정성 여부(네덜란드)에 관한 것이다. 각하, 기각된 9건의 반이 넘는 6건에 대해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다.

개인진정 사례에서는 각 당사국의 상이한 제도와 법집행 과정 등이 나타난다. 동시에 여성차별의 공통적인 양상도 엿볼 수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제기된 가족성에 관한 2건의 진정은²³⁾ 유사한 상황에 있는 한국에서 참고로 삼을 만하다. 즉 프랑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협약 제16조 g항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기혼, 미혼의 프랑스 여성들이 프랑스의 가족성 제도가 여성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2건 모두 각하로 결정되긴 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보된 조항에 대한 심의에서도 위원회가 협약의 다른 조항도 같이 적용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을 결정문에서 볼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조사 사례

현재까지 위원회는 1건의 조사를 시행하였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여성 살해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 이외에도 여성단체들이 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는 사안들이 3건 더 있었으나 위원회 내부의 토론 끝에 모두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조사에 대해서는 따로 실무그룹을 두지 않고 바로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다.

23) Communication No. 12/2007과 No. 13/2007. 주 22)의 웹사이트에서 CEDAW/C/44/D/12/2007과 CEDAW/C/44/D/13/2007을 볼 것.

1) 멕시코의 중대한 여성인권침해 사건

국제여성단체 Equality Now와 멕시코 여성단체 Casa Amiga는 함께 위원회에 의정서 제8조에 의거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2002. 10. 2일자로 제출하였다.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멕시코 북부의 Ciudad Juarez라는 곳에서 1991년 이래로 계속 300명이 넘도록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수출자유지역으로 공장밀집지대로서 희생을 당한 300명이 넘는 여성들은 주로 공단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2003. 1. 30. 제28차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멕시코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2003. 5. 15.까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2003. 5. 15. 뉴욕주재 멕시코 대표부를 통해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즉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즉시 약속하고, 동시에 위원회의 방문조사를 환영할 것이며, 조사 후 위원회가 내는 권고안도 다 수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두 NGO와 멕시코는 이후 사건의 추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결과 의정서 제8조 2항에 의거 멕시코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기로 2003. 7. 결정하고 멕시코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3. 10. 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멕시코에 조사단으로 파견하였고, 두 위원은 10. 18-26.의 기간 동안 각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등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두 조사위원의 초안을 바탕으로 멕시코 정부당국에 대한 권고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모두 16가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멕시코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CEDAW협약을 준수하고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보호의 책임을 다할 것, 모든 사회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 그리고 NGO와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긴밀한 관계를 수립할 것 등이다. 둘째, 범죄수사와 처벌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간의 공조를 강화할 것,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호제공, 미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8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였다. 셋째, 여성폭력 방지, 안전조치 및 여성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항목에서는 경찰 등 법집행 관리에 대한 훈련과 의식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배정, 특별감찰관 임명 등 4개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특별 수사검사와 특별감찰관의 임명, 모든

사건의 재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²⁴⁾ 위원회는 등 조사를 종결한 이후에도 권고문의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정기보고서 심의 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V.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모니터링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협약 제17조에 의해 협약의 가입국이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982년 설치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은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23명의 개인 전문가로 구성된다.²⁵⁾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다양한 문명과 법체계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위원수가 배분되어 있지는 않다. 위원들은 협약 당사국이 후보를 추천하고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2년마다 절반씩 선출한다. 협약 가입국 수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선출되며, 4년의 임기로 활동하고 연임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가 추천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국가 대표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협약 자체에는 회의 일수를 연 2주 이내로 한정하여 놓았다(제20조 1항). 그러나 가입국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심의해야 할 보고서도 증가하여 유엔 총회의 결정에 의해 회의 일수도 증가하여 왔다. 현재는 매회기 3주간씩 연 2회 혹은 3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2그룹으로 나뉘어 동시에 보고서를 심의하기도 한다.

24) Report on Mexico produc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der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nd reply from the Government of Mexico, CEDAW/C/2005/OP.8/MEXICO, 27 January, 2005. 이 보고서는 총 93쪽에 이른다. 문제의 성격과 조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Maria Regina Tavares da Silva and Yolanda Ferrer Gomez, "The Juarez Murders and the Inquiry Procedure," in The Circle of Empowerment, pp. 298-308.

25) 현재는 1명이 결원으로 22명이며, 위원 분포는 아시아 6명, 아프리카 5명, 서유럽 5명, 동유럽 3명, 중남미 3명이다. 1명의 결원은 남아공의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이후 남아공 정부가 신임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 자격에 성별 제한은 없으며, 현재 남성위원은 2명으로 네덜란드와 핀란드 위원이다. 위원 명단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membership.htm>에 나와 있다.

가. 국가보고서 심의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협약 당사국이 비준 후 1년 이내, 이후 매 4년마다 제출하게 되어있는 보고서를 심의하는 일이다. 유엔에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심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국가보고서 제출 → 유엔 공용어 번역 → 심의일정 결정 → 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pre-session working group)에서 질문서 작성 → 당사국 답변서 제출 → 국가대표단 출석 심의 → 권고문 채택 및 송부. 통상적으로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까지는 1년~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심의할 때 위원회가 검토하는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당사국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 이행보고서, 회기 전 실무그룹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심의 당일 구두 발표문(현황 up-date)
- ② 당사국에 대한 타 조약기구의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
- ③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인권상황검토(UPR)²⁶⁾ 보고서
- ④ 유엔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보고서
- ⑤ 유엔 전문기구(ILO, WHO, UNHCR, UNESCO 등등)의 보고서
- ⑥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보고서(여성인권팀, 국가인권기구팀)
- ⑦ NGO 보고서(shadow report)
- ⑧ 기타 신뢰할 만한 정보

심의 후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미리 결정해 놓은 국별 보고관(country rapporteur)에 의해 당사국에 대한 권고문 초안이 만들어지면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를 문항 별로 검토하여 채택한다. 회기가 끝난 후 최종 권고문은 해당국에 송부되고, 해당 당사국은 이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26) 인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엔 내 인권을 다루는 정부 간 기구가 2006년 강화되었다. 기존의 유엔 인권위원회가 개편되어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정례 인권상황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이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 주기로 검토하면서 개선해야 할 상황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된다. 한국은 2008년 5월 이미 UPR을 거쳤다. UPR에 관한 정보는 <http://www.ohchr.org/EN/HRBodies/UPR/Pages/UPRMain.aspx>을 볼 것.

나. 개인진정 심의와 직권조사

선택의정서 가입국이 점차 늘어나고 국내절차 소진에 필요한 시간도 경과함에 따라 선택의정서 관련 업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개인진정 건은 위원회 전체가 같이 검토하기 전에 사전 논의과정을 거친다. 즉 선택의정서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구성된 개인통보 실무그룹에서 진정사례를 미리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²⁷⁾ 이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실무그룹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열띤 토의 끝에 실무그룹의 제안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 토론과정은 협약에 대한 해석, 성차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진정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관례로 작용하게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다. 유엔 총회에서의 제안과 일반권고

지금까지 27년의 위원회 역사 동안 위원회는 모두 26개의 일반 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를 채택하였다.²⁸⁾ 일반 권고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의 내용을 보다 잘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분명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예, 일반권고 No. 18: 장애여성에게 대한 정보 제출, 1991), 협약의 특정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한다(예, 일반권고 No. 25: 잠정적 특별조치, 2004). 초기의 일반권고는 짧고 단순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1992년 이후에 채택된 일반 권고는 상당히 길고 상세한 내용으로 위원회 자체도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권고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NGO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밖에도 특정국가의 여성관련 사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당사국, 유엔 기구

27)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운영규칙 제62조에 의거, 선택의정서 하의 통보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 1명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cedawreport-a5638-RulesOfProcedure.htm>. 국가보고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나라의 진정사건이 다루어질 때에는 위원회 운영규칙 60조에 의해 실무그룹이나 전체 위원회의 토론이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8) 모든 일반권고는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comments.htm>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에 신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유엔과 해당국에 편지를 보내 여성협약이 잘 지켜지도록 촉구하였고, 동남아시아에 쓰나미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구호활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관계에 관한 성명서²⁹⁾를 발표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해 주기를 제안하였다.

라. 기타 회의, 세미나

위에서 기술한 업무는 모두 위원회의 정기회기 중에 처리되는 일이다. 그러나 정기회기만으로는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비공식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곤 한다.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회의는 경비를 부담해 줄 초청국가가 교섭이 되어야만 회의개최가 가능하다. 필자가 위원으로 재직한 8년의 기간 동안에는 대략 2년에 한번 정도로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몇몇 선진국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³⁰⁾

이밖에도 유엔 전문기구와의 간담회, 세미나 등이 있다. WHO와 여성폭력 지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 유엔난민사무소와의 협력모색을 위한 세미나, NGO와의 간담회나 리셉션 등이 회기 중에 별도로 열리거나 아예 따로 일시를 잡아 개최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활동 중 위원회의 중요한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위원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책을 발간한 일이다.³¹⁾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현직 위원 42명의 논문과 개인적인 소회를 담고 있다.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의 의미와 위원회의 업무, 발전과정 등을 볼 수 있다.

29)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docs/Annex11e.pdf>.

30) 위원에 선출된 해인 2000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선택의정서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었고, 2002년에는 스웨덴 룬트에서, 2004년에는 네덜란드 유트레히트에서, 그리고 2006년에는 다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3일간의 회의 경비는 대략 2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31) 이 책에는 필자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Heisoo Shin, "CEDAW and Violence against Women: Providing the Missing Link," Hanna Beate Schopp-Schilling, ed. and Cees Flinterman, asso. ed., *The Circle of Empowerment: Twenty-Five Year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The Feminist Press, 2007.

2. NGO의 역할과 기여

유엔은 국가가 회원인 기구이지만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³²⁾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NGO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협약 당사국의 국가보고서는 대부분 법과 제도, 프로그램에 대해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띤다. 반면 그러한 정책이나 조치의 실제적 효과, 또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NGO이다. NGO는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 위원들은 NGO가 제공한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대상국의 여성현실과 문제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정부대표단에게 적절한 질문과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³³⁾ NGO의 증대된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웹사이트에 NGO보고서도 게재되고 있다.

NGO 대표들의 위원회 회의 참석은 정부대표단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심의를 받는 국가에서 정부대표들만 참석했을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자국의 NGO 대표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심의를 받게 될 당사국의 NGO에 대한 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은 90년대부터 점차 확대 실시되어 왔다.³⁴⁾ 그 결과 지금은 NGO의 위원회 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되었고, 이는 협약의 국내이행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32) NGO는 유엔 헌장 제71조에 의해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문제에 관해 자문자격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 경제사회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13,000개이다.
<http://www.un.org/en/civilsociety/index.shtml>

33) NGO의 참여와 의견개진은 위원회 운영규칙 47조에 규정되어 있다. NGO 대표는 위원회 본 회의뿐만 아니라 pre-session working group에도 참여하여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NGO의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docs/NGO_Participation.final.pdf.

34) 여성협약에 대한 NGO의 훈련과 지원은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Asia Pacific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IRAW-AP는 "From Global to Loca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심의를 앞둔 나라의 NGO에 대한 훈련과 NGO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원하고, NGO 브리핑을 개최하고 로비하는 방법까지 훈련하였다. IRAW-AP에 관한 것은 <http://www.iwraw-ap.org>를 볼 것.

가. 위원회 심의 시 NGO의 참여

1) NGO 보고서 제출

NGO의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심의를 받게 될 당사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대안적 보고서의 성격을 띤다. 때문에 NGO보고서의 생명은 정부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정부보고서가 밝히고 있지 않은 성차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과 내용은 NGO 마음대로이다. 다만 협약의 각 조항에 맞추어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약의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모든 조항을 다 다룰 수도 있고, 특정한 조항 몇 개, 또는 한개만 선택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여성 폭력이나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 여러 NGO들이 연대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NGO가 별도의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 반드시 자국의 NGO만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NGO, 또는 국제NGO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³⁵⁾

2) 위원회 회의에의 참여

NGO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상관없이 NGO 대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구두로 발언하고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NGO대표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공식적으로 배정된다.

가) 위원회 정규 회의 참여

위원회 회의 3주간 동안 정부대표단을 상대로 한 공개심의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대부분 끝내고, 셋째 주는 비공개로 진정서 심의와 권고문 채택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첫날에 NGO와의 시간을 배정한다. 이 시간에

35) 한 예로 일본의 협약이행에 대한 2009. 7.의 제44차 위원회 심의 시 모두 19개의 NGO보고서가 제출되었다.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cedaws44.htm>에서 일본을 볼 것. 19개중 5개가 한국의 정대협 등 외국의 NGO가 제출한 보고서였다. 이중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대한 것은 3개였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외에도 일본의 두 NGO가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또 국제고문반대운동단체인 OMCT의 보고서도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포함하였다.

NGO 대표는 심의대상국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회의 시간 이외에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이제 정형화 되었다. 또 NGO대표들이 위원을 개별적으로도 만나 문제를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쳐 궁극적으로 권고안에 NGO의 관심 사안이 포함되도록 활동할 수 있다.

나)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 참여

위원회는 정해진 회기에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기 전에 ‘회의 전 실무그룹(pre-session working group)’을 개최하여 심의대상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다. 실무그룹은 위원들 중에서 지역별로 1명씩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주된 역할은 정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해당국 정부에게 보낼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의문사항, 미비사항이 발견된다. 질문지를 통해 보고서에 대한 보완적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본 심의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NGO대표가 회기 전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질문지를 제대로 작성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NGO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NGO의 실무그룹에의 참여는 낮은 편이다.

3) 정부보고서 작성과정에서의 NGO 의견 개진

정부보고서는 물론 정부가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는 정부보고서가 초안을 작성한 후 반드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GO는 정부보고서 초안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실상을 올바르게 기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NGO의 활동을 억압하는 일부 비민주국가의 경우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했는지의 여부도 NGO에 알려주지 않는 나라도 있고, 제출된 정부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아 유엔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후에나 입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모국어가 유엔의 6개 공용어가 아닌 국가의 NGO는 언어장벽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친정부 성향

의 NGO에게만 의견을 조화하거나, 형식적인 수렴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나.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NGO의 활동 및 모니터링

여성협약의 이행을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비판, 촉구, 감시하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NGO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이는 국제적 무대에서의 여성협약이행에 대한 점검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치르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게 된다. 심의 후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가 협약이행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권고사항을 널리 알리고 정부의 이행여부를 NGO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NGO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되어도 계속적인 NGO의 감시활동이 없이는 종이위의 법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³⁶⁾

여성협약의 이행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지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NGO의 일상적 사업은 그 자체가 바로 협약의 이행이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NGO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것보다 NGO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NGO의 여성인권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이 각국에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는 NGO보다는 훨씬 역사가 짧다. 120여개에 달하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 설립되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와의 관계도 역사가 짧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시 해당국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도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다.

36) 조지아와 과테말라의 예. Shanthi Dairiam, "From Global to Local: The Involvement of NGOs," The Circle of Empowerment, p. 323.

37) 유엔은 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원칙, 구성,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을 채택하고 각국에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만이 유엔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진다. A/RES/48/134.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독자적인 자격으로 참여가 결정된 것은 2006년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인권보호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위원회와 국가인권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³⁸⁾ 이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는 파리원칙에 입각해서 설립되어야 할 것과 인권보호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의 원칙 하에서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균형을 갖추는 것, 국가인권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약과 선택의정서, 위원회의 가입국에 대한 권고와 일반권고,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 등을 널리 홍보, 교육할 것, 정부의 협약이행을 모니터링 할 것 등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다각적인 경로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한국정부가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적으로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중점 목표 중의 하나로 책정하고, 모든 정책이나 진정서 심의 시 사안과 관련된 국제 협약을 판단시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CEDAW협약 선택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선택의정서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하였고,³⁹⁾ 동년 7월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 시 참석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에 CEDAW 위원들이 참석한 계기를 활용하여 CEDAW 관련 국제포럼⁴⁰⁾도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CEDAW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역할을 일정정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홍보와 교육,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38)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CN.6/2008/CRP.1. 성명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docs/AnnexIIe.pdf>

39)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2007. 1. 12.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여성관련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40) 2008.11.27.개최된 국제포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외교통상부, 여성부가 후원하였다.

Ⅵ. 협약이행 모니터링 제도의 효과와 한계

1. 모니터링 제도의 효과

가. 성평등 상황의 정기적 점검과 개선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약 당사국은 정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전 심의시의 지적과 권고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차별적인 법을 개정한다든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NGO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요구사항을 분명히 정리하게 되고, 동시에 위원회가 적절한 권고문을 채택하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나. 국제적 공론화를 통한 책임성, 투명성의 확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의 각 조항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가를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장이다. 회의장에 누구나 참석해서 방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에 대해 유엔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나가고, 회의 녹취록이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당사국의 협약이행의 정도를 심의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 NGO의 활성화

협약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정기적 공개심의제도는 정부의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NGO가 보다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별 NGO가 독자적으로 따로 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NGO가 연대하여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약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지게 되고,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 이외의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로비하고, 브리핑을 개최하고 하는 활동을 통해 유엔 인권최고

대표 사무국과 자국 정부대표단과의 관계, 관련 국제NGO나 다른 나라 NGO와의 관계도 긴밀해진다.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 활동은 국내에서의 모니터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활동은 NGO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2. 협약이행 모니터링 제도의 한계

가. 보고서 미제출과 장기 지연

협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협약에 가입하고도 기본 의무로 되어 있는 보고서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는 것이다. 1981년 협약이 발효되어 지금까지 186개국이 비준하였지만, 마감기간 내에 보고서 제출을 안 한 가입국이 59개국, 107개 보고서에 달하고, 5년 이상 보고서가 밀려있는 국가도 20개국이나 된다.⁴¹⁾ 보고서 지연의 주요 이유는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주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내전으로 정정이 불안하거나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고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의지의 결여 때문이다. 협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의 경우 보고서는 당연히 제때에 제출된다. 유엔 사무국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밀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몇 개의 보고서가 밀려 있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보고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보고서 제출을 안 한 아이티(Haiti)의 경우 1차 보고서부터 7차 정기 보고서까지를 모두 합쳐 한 보고서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오랫동안 밀린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보고서가 없이도 심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⁴²⁾

41) 매 위원회 회기때마다 각국의 보고서 제출현황에 관한 문서가 발간된다. Status of submission of reports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EDAW/C/2010/45/2, Annex I States parties whose reports are due and had not yet been submitted to the Committee as at 15 October 2009 and Annex II States parties whose reports were five years or more overdue as at 15 October 2009.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edaw/docs/AdvanceVersions/CEDAW-C-2010-45-2.pdf>.

42) 위원회는 2008년 보고서가 지연된 모든 국가들에게 다시 한 번 제출을 독려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없이도 심의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보냈다. 이 결과 1980년대에 협약에 가입하고도

나. 유보조항

협약 제28조 2항은 “본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합치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협약 가입 시 협약의 중요한 조항에 유보를 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들의 경우 핵심조항인 2조(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금지)와 16조(결혼과 가족관계의 평등)에 유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가입시에 9조(국적)와 16조의 여러 항목을 유보했으나 그간의 국적법과 가족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유보를 철회하고, 현재는 16조 g항(가족성)에 대한 유보만 남아 있다. 북한은 2조 f항(차별적 법, 규정, 관습, 관행의 폐지), 9조 2항(자녀의 국적에 대한 여성의 동등권)을 유보하고 있다.

유보조항은 가입국의 이행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유보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1987년에는 일반권고 4호를 채택하여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합치되지 않는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가보고서 심의시에도 철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선순위로 하고, 권고문에도 유보조항의 철회를 항상 포함시키고 있다.

다. 후속조치의 미비

보고서 심의 후 위원회가 채택하는 최종 권고문을 각국이 보다 잘 실천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엔 총회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부분적인 조치로나마 위원회는 제41차 회의(2008. 6. 30-7. 18)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안 중에서 가장 긴급히 이행되어야 할 사안을 한 두개 선별하여 1년 또는 2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밖에 유엔 사무국이나 여성기구, 여성 NGO 등에서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권고문 이행을 위한 회의를 주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개별적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Haiti, Liberia, Guinea-Bissau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2009년 심의를 받았다. 도미니카는 끝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제43차 위원회에서 보고서 없이 심의하였다.

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⁴³⁾

Ⅶ. 협약의 효과적 국내이행을 위한 과제

협약의 충실한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강한 의지가 있을 경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1. 협약의 홍보, 교육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당사자인 여성들이 잘 알도록 협약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공무원, 법조인,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여성 단체와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에게 협약을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2. 보고서의 적시 제출

정기 보고서는 매 4년마다 제출되어야 한다. 이전 보고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또는 언제 심의를 받았는가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몇 차 정기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보고서작성은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 작성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어야 한다. 즉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정책, 프로그램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과가 정책입안 시 기대했던 대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새로운 정책과 입법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43)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2007. 10. 20~21.에 북경에서 위원회의 권고문 이행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위원회 의장과 필자, 중국과 협력 사업이 긴밀한 전임 스웨덴 위원이 초청받았다.

3. 유보조항의 철회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면 이는 이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유보조항은 둘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8조 2항), 실제로는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그 결과 여러 나라가 협약 제2조, 5조, 7조, 9조, 16조 등 핵심조항에 대해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조항을 두더라도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전혀 비준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일단 비준을 하면 유보조항을 제외하고 협약을 이행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고, 보고서도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 남아있는 협약 제16조 g항, 즉 가족성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과제이다.

4. 심의 후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 받게 되는 최종권고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 따라서 이 권고사항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보고대회 등 공개포럼을 통해 관계 부처와 국회, 여성계, 언론계 등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사항의 이행은 장·단기 또는 연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시행하도록 한다.

5.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연계

여성협약의 이행은 여성정책 전담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다. 행정부의 모든 부처, 입법부, 사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의 과제이다. 여성부가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지만 모든 부처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NGO의 활발한 활동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건전한 시민사회, NGO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활발한 여성운동단체의 존재 여부, 또 NGO와 정부 간의 협력의 정도에 따라 협약 이행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위원회가 정부대표단을 불러 심의를 하는 것은 4년에 한번, 때로는 9~10년에 한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엔에서의 심의를 마치고 나면 다음 심의 때까지 NGO의 활동 여하에 따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정부가 협약을 잘 이행하도록 평상시에 비판과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선택의정서의 활용

협약에 대한 홍보, 교육과 더불어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 절차에 대해서도 여성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여성 피해자를 위해 특히 여성단체에서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 및 진정서 제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참고문헌

- 신혜수(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집(2007. 1. 12), 국가인권위원회.
- Hilary Charlesworth(2009). “Inside/Outside: Women and International Law,”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Feminist International Legal Studies and Thirty Years of the CEDAW Convention, Asi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1-2 August 2009, Tokyo University.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992).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on violence against women, adopted at the eleventh session.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recommendations/recomm.htm#recom19>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2004).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on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adopted at the thirtieth session.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recommendations/recomm.htm#recom25>
- Shanthi Dairiam(2007), “From Global to Local: The Involvement of NGOs,” Hanna Beate Schopp-Schilling, ed. and Cees Flinterman, asso. ed., The Circle of Empowerment: Twenty-Five Year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The Feminist Press.
- Hanna Beate Schopp-Schilling, ed. and Cees Flinterman, asso. ed.(2007). The Circle of Empowerment: Twenty-Five Year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Feminist Press.
- Heisoo Shin(2007), “CEDAW and Violence against Women: Providing the Missing Link,” Hanna Beate Schopp-Schilling, ed. and Cees Flinterman, asso. ed., The Circle of Empowerment: Twenty-Five Year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The Feminist Press.
- Maria Regina Tavares da Silva and Yolanda Ferrer Gomez(2007). “The Juarez Murders and the Inquiry Procedure,” Hanna Beate Schopp-Schilling, ed. and Cees Flinterman, asso. ed., The Circle of Empowerment: Twenty-Five Years of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The Feminist Press.
- United Nations(1993a).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ES/48/104.

- United Nations(1993b). Paris Principles, A/RES/48/134.
- United Nations(2000).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ited Nations(2001).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E/C.12/1/Add.59.
- United Nations(2005). Report on Mexico produc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der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nd reply from the Government of Mexico, CEDAW/C/2005/OP.8/MEXICO.
- United Nations(200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 Parties under Article 40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3.
- United Nations(2008).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its relationship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CN.6/2008/CRP.1.
- United Nations(200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tatus of submission of reports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CEDAW/C/2010/45/2.



CEDAW와 국내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

김 선 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주제발표

CEDAW와 국내여성관련 법률 현황 및 과제

김 선 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1. 한국의 CEDAW 가입과 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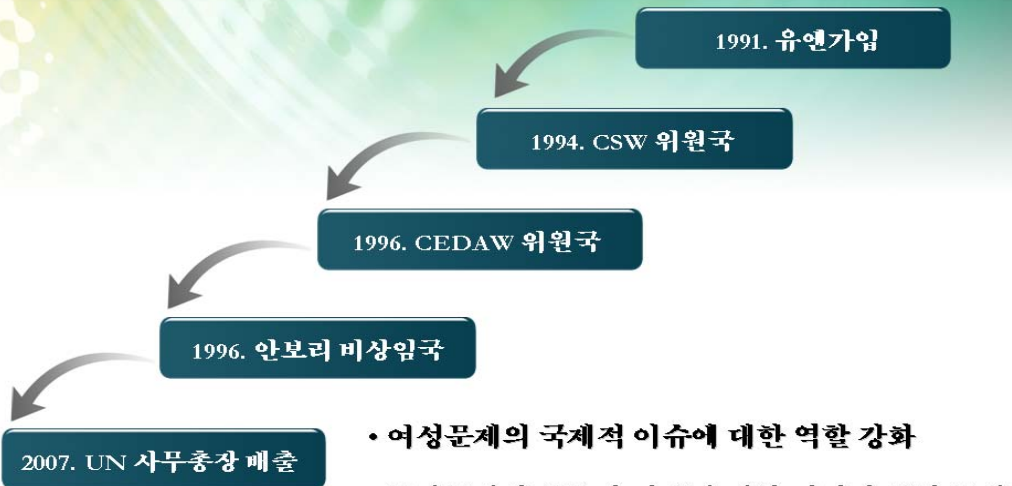
• 협약가입의 의미:

협약의 목적에 동감하며 평등사회구현을 위하여

사실상의 평등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정치적, 법적 의지를 나타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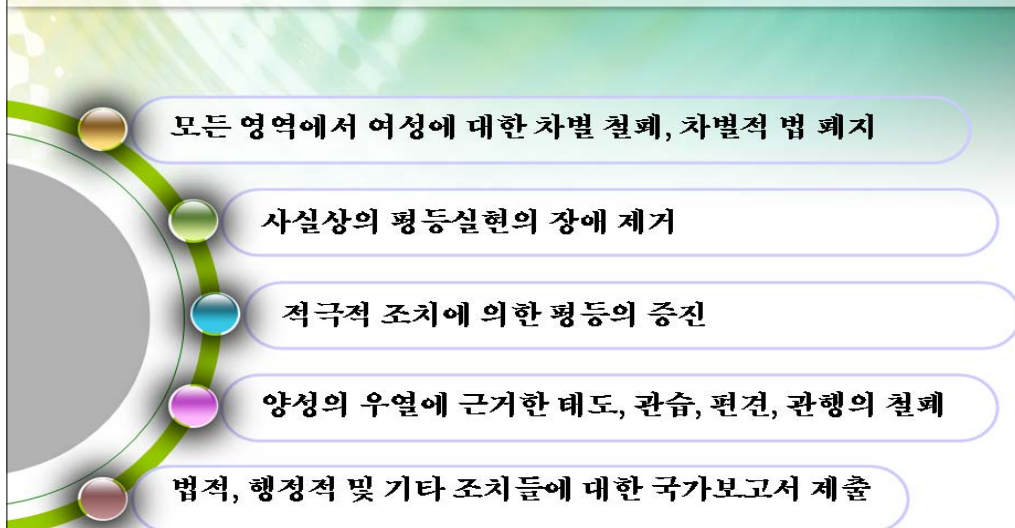
1

I-2. 우리나라와 유엔



2

II-1. CEDAW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3

II-2. 국가보고서 제출의무 이행상황

구분	제출	심의
제1차	1986. 2	1987. 3. 30~4. 10 (6th session)
제2차	1989. 12	1993. 1. 18~2. 5 (12th session)
제3차	1994. 9	1998. 6. 22~7. 10 (19th session)
제4차	1998. 1	
제5차	2002. 12	2007. 7. 23~8.10 (39th session)
제6차	2006. 2	
제7차	2010. 2 (보고서 제출 예정)	

4

II-3. 유보조항과 철회 상황

유보조항철회의무: 협약 비준 당시 유보했던 국내법 조항을
협약과 일치되도록 개정해야 하는 의무

유보철회조항

제9조	1997년 국적법 개정으로 1999. 8. 24에 유보철회
제16조 제1항 (c),(d),(f)	1989년 가족법 개정으로 1991. 3. 15에 유보철회

남은 유보조항

제16조 1항 (g)	가족성(姓)에 대한 부부로서의 동일한 권리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

5

II-4.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기구설치



6

II-5-1. 선택의정서 비준

- 1999. 10. 6.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 2000. 12. 22 발효(10개국 비준 후 3개월후 발효)
- 한국 2006. 10. 18. 82번째 국가로 가입
- 2007. 1. 18 발효(조약 제1828호)
- 선택의정서 비준의 의미
 - 국내법상의 성차별에 관한 권리구제에 더 충실해질 것을 요함
 -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국내법의 구제절차를 다 거처도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 CEDAW에 진정이 가능해짐

7

II-5-2. 선택의정서 기준

진정절차

- 협약에 규정된 성평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입은 경우
- 국내법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때
-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 CEDAW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8

III-1.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

- CEDAW 가입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의 성과가 있었음

- 차별적 법의 폐지, 개정
- 차별금지법
- 사실상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 성주류화 관련 입법

- 이 성과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 여성 NGO 활동의 강화, 정권교체시마다 얻어낸 여성정책공약 그리고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컸음.

9

III-2. 차별의 금지와 차별적 범의 폐지

협약 제2조: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정책 및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할 국가의무 규정(협약 제7조~제16조)

우리나라의 주요 입법조치

- 1990년, 2005년 민법개정
- 1995년 사관학교설치법 개정
- 1997년 국적법 개정
-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 제정
- 2000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200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 2006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

III-3.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협약 제2조 가호,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사실상 평등실현을 위한 조치

우리나라의 주요 입법조치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 1997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및 처벌특례법 제정
- 2004년 성매매방지법 및 처벌법 제정
-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

11

III-4.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협약 제4조 제1항

“여성과 남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인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CEDAW 일반적 권고(General Recommendation)

No. 5(1988): 잠정적 특별 조치

No. 23(1997): 정치적 및 공적인 생활

No. 25(2004): 한시적 특별 조치

12

III-5.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우리나라의 주요 입법조치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 1998년 남녀차별금지법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님을 규정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치 시행 법적 근거 규정
- 1995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 2000년, 2002년, 2004년 정당법 개정
- 2002년, 200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 정치자금법) 개정 등

13

III-6. 성주류화관련 입법

- 협약 제3조
-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유엔여성정책의 주요 기조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여성이 사회 전체의 모든 분야에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법, 정책, 프로그램에 젠더관점이 통합됨으로써
사회 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 등이
성평등하게 변화하는 것”

14

III-7. 성주류화관련 입법

우리나라의 주요 입법조치

-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2010년 시행)
- 2006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성인지적법령심사
- 2007년 통계법 개정: 성별통계

15

VI-1.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 CEDAW 이행을 위한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적 조치는 CEDAW(위원회)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법이 제정/개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이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16

VI-2.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1. 협약 이행의무의 국내법에서의 구체화

- a) 헌법 / 여성발전기본법 등 성평등관련법에 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 b)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17

VI-3.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2. 법 이행 주체들의 법이행을 위한 정책의 구체화: 국가, 지자체 등

- a) 성차별적 법규정의 폐지 내지 개정: 유보조항 철회 등
- b) 여성관련법률의 효과적인 집행
- c) 불평등한 현실의 조사, 분석을 통한 구체적 입법적 조치와 정책의 개발
 - 여성의 삶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경제적 불이익의 폐지
 - 여성이 평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없는 장애의 극복을 위한 지원
 - 여성의 모든 부문에서의 공정한 참여와 권한의 보장
 - 모성권의 보장
- d) 남녀역할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 Gender Balance
 -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 사회보장관련법의 보완
- e) 성주류화의 실행을 위한 입법의 구체화

18

VI-4.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3. CEDAW 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 a) 잠정적 특별조치(적극적 조치)
- b) 여성에 대한 폭력
- c) 이주여성

19

VI-5.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4. CEDAW 에 대한 교육

- a) 공무원
- b) 법조인
- c) 기업인
- d) 일반인 – 평생교육기관 등
- e) 학생 - 교과과정

20

VI-6. CEDAW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5.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법적 과제

- 세계화에 따른 성평등의 영향/효과 연구
 - 새로운 차별에 대응
 - 공공부문에서 모든 영역으로 확대
- 성별역할의 변화를 위한 재구조화
- Governance: NGO 등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21



토 론 문

차 인 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 민 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 선 혜 (여성부 교류협력과장)

곽 수 경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장)

김 경 윤 (노동부 여성고용과장)

박 숙 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차 인 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 두개의 발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행 입법과제의 방향과 협약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과제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함. 따라서 본 토론문은 CEDAW 이행 입법과 조치를 위한 국회 쪽의 노력과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함.

■ CEDAW 협약에 대한 인식

- 국회여성위원회 2007년도 국정감사자료집을 통해 정부보고서에 대한 CEDAW 권고사항을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한 바 있음.
- CEDAW 협약자체에 대한 인식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그 간 우리사회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권 증진 관련 입법은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책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입법 등의 조치들을 점검하고 과제를 공유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논의되고 있는 CEDAW 권고 관련 입법과제

o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 과제

- 2000년 서명했으나, 9년이 경과하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음.
- 2009. 11. ‘UN국제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계류 중.
- 인신매매의 정의, 예방, 처벌, 피해자보호 및 지원, 국제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주요 조항들이 1975년 이후 개정 없음. 인신매매의 정의 없고,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인신매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o 정치 분야 여성참여 확대 과제

- 2010년 지방의회 선거 관련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 등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 여성의원들이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요구 전달 (비례대표직 전체의 50%로 확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공천심사위원 여성 확대 등)

o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논의

- 국회여성위원회 성평등입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1월 ~ 10월 시안작업
- CEDAW 정신에 부합하는 시안 추구
(법체계 구성 상 성차별 등의 금지, 성평등 촉진, 성 주류화 체계화, 누락된 성매매방지, 이주여성 문제 보완, 성 인지 통합교육 제시 등 여성발전기본법의 1995년 틀로부터 발전적 변화 모색)

o CEDAW 정신의 외연확대 : 성 인지 입법

- 개발협력기본법 제정(2009. 11.25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의결)
제2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 및 아동의 인권과 성평등 실현의 문구를 포함

함으로서 해외원조 시에 CEDAW 정신 실현의 근거조항 마련

■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과제

- o 여성인권 및 성평등 관련 정부보고서의 국제기구 제출 시 사전 심의 또는 보고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음.
(현 성평등기본법 시안에는 보고로 되어 있음.)
- o 발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부터의 권고 사항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계획을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재판 규범성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1. 시작하며

우리나라는 1984. 12. 2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래¹⁾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성관계법의 제정과 여성 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협약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적 노력을 해 왔다.²⁾ 사법부에서도 여성에게 중증의 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원용한 이래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논거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언급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1) 우리나라는 1984. 12. 18.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4. 12. 27.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은 1985. 1. 26.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게 되었다.

2) 대표적인 예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제정 및 수차에 걸친 가족법의 개정, 국적법과 국제사법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당초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적법에 관한 협약 제9조와 가족법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중 (c), (d), (f), (g)항을 유보하였으나, 그 후 국내 관련법들이 개정됨에 따라 유보 조항 중 협약 제16조 제1항 (g)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철회하였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는 글로는 최윤희, “여성관련 법규정들의 세계화 노력 및 그 과제”, 저스티스 제92호, 2006. 7, 89-114면. 헌법재판소 2000. 8. 31.자 97헌가12 결정은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 이유가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시의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가.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수용이론(theory of incorporation)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국내법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없이 그 자체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³⁾

우리나라 정부도 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다.⁴⁾ 즉, 정부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른 제1차 보고서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규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비준, 공포됨으로써 별도의 국내 입법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견해는 시민 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른 2차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본 규약은 ... 별도의 국내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와 법원은 권한 행사에 있어 규약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인이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규약에 상응하는 국내법을 토대로 판결을 하고, 규약 내용과 상응하는 국내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규약의 조항이 직접 원용된다”.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정부가 비준하였으므로 국내법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법정이나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어 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⁵⁾ 이처럼 개인이 규약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규약의 조항을 직접 원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견해는 규약이 개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직접 청

3)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1997), 143면, 김정진, 국제법, 박영사(1993), 72면 등.

4) 이하 조용환, “조약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 사회 2008년 상반기 제34호(2008), 94-96면에서 재인용.

5) 1986. 2.의 최초보고서, paras. 24-26., 1989. 12.의 제2차 보고서, paras. 24-26. 한국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1차에서 4차까지의 보고서의 영문과 국문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3권, 2002에 수록되어 있다.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⁶⁾

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직접적용

위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 방식 내지 영역과 관련하여 조약의 직접적용성 내지는 자기집행성이 문제된다.

즉 학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규범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와 직접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구별된다고 보면서⁷⁾ 법률을 통한 어떠한 구체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 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⁸⁾ 이러한 조약을 자기집행적 조약이라 한다. 나아가 자기집행조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요건으로, 당해 조약규정의 내용과 형식이 문언상으로 보아 개인의 권리가 구체성(concreteness)과 특정성(specificity)을 지님으로써 개인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를 창설할 것을 목표로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국내적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것과, ② 주관적 요건으로, 조약의 기초자들이 당해 조약규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며, 그 자체만으로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의도하였음이 조약의 문언상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⁹⁾ 또한 조약의 자기집행력 내지 직접적용 가능성은 반드시 조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리 가능한 최소 단위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조약 기초자 및 당사국의 의사로, 조약 문언의 내용·목적·대상 및 표현, 그 명확성 및 완전성의 정도, 당해 조약에 대하여 국내적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6) 조용환, 위의 글, 96면.

7) 박찬운,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인권과 정의 320호(2003. 4.), 113면, 조홍석,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서열과 직접적용가능성”, 17-19면. 유남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직접적용가능성”, 재판실무연구Ⅲ, 비교법실무연구회, 220-221면.

8) 조홍석,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헌법학연구 4집 2호, 87면.

9) 김태전,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2004. 10. 27.), 9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¹⁰⁾

렇다면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직접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문은 대부분 “당사국은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당사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인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이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당사국의 의무가 반드시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고, 오히려 개개 규정 내용을 볼 때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다른 어떠한 국제조약보다도 구체적이며, 고용, 교육, 모성보호, 인신매매, 성폭력, 정치참여 등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민적 기타 모든 영역과 부문을 포괄하여 여성의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확하고도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의 의무로서 입법의무뿐만 아니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도 이 협약에서 말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에 포함된다.¹¹⁾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재판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용이 가능한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간접적용

한편 국내 법원은 기존의 국내법규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함에 있어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또는 보강자료로서 국제인권협약을 이용할 수 있다. 헌법규정, 특히 기본권규정은 매우 추상적인 것인 만큼 그 규정과 관련된 개별 국제인권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인권협약을 전면에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통상 국제인권협약의 ‘간접적용’(indirect application)이라 한다. 이는 어떠한 행위가 직접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인권규정을 적용·해석함

10) 박기갑, "조약의 자기집행력: 프랑스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Ⅲ], 1999, 193-194면.

11)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법학 제46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84면.

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에 합치되도록 해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법화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 합치 해석의 원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¹²⁾ 나아가 이러한 국제인권협약의 간접적용방식은 그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조약 자체로서 국내법적으로 직접적용 가능한 자기집행조약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서는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비자기집행조약, 국제기구의 결의와 같은 비구속적인 국제문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View), 일반의견(General Comment)과 같이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국제인권기관의 결정이나 의견 등도 국내법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¹³⁾ 이러한 국내법의 해석기준으로서의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의 불명확성과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간극을 보충하여 국내법규정을 국제인권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해석을 선택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헌법 제11조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조항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헌법의 여성차별금지규정의 취지와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적용·해석함에 있어 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3.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수용한 판례

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종의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여러 가지 사회적 및 법적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12) 김태천, 위의 글, 26면.

13) 김태천, 위의 글, 34면, 정경수,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실태와 증진방안”, 위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2004. 10. 27.), 97-98면.

14) 김태천, 위의 글 26면.

근거의 하나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명시하며 “1985. 1. 26.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체약국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 기타 모든 관행의 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협약의 직접적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 수 있다.¹⁵⁾

그 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에서는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종중이 임시총회 결의로써 종중 규약을 개정하면서 ‘여손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 69명에 한하여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한다.’고 정한 것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여성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2007다34982 판결은 그 판결 이유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살려 종중 내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¹⁶⁾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미확정)¹⁷⁾에서도 종중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없이 남자 종원으로 하여금 여자 종원보다 2.5배

15) 헌법재판소는 2005. 2. 3.자 2001헌가9 등 결정에서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견이 실시한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 질서 외에 오늘날의 전통과 전통문화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중 인류의 보편가치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나타난 원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로는 윤진수, 위 논문, 98면.

16)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05. 7. 21.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라 할 것이므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7)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나97187호로 항소심 계류 중이다.

많은 재산을 분배받도록 한 종종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9235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한 뒤 “위와 같이 사회일반의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 등에 의해 성년여자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종원은 남자 종원과 동일하게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종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종중이 종종재산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자 종원에 비해 여자 종원 전체에게 일반적으로 불이익하게 분배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는 성년 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게 된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여자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미확정)¹⁸⁾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는 그 일반회원들 중 여성회원들에 대하여는 총회의 구성원인 총회원이 될 자격 내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성회원들인 원고들이 이러한 서울 YMCA의 처우는 헌법이나 민법상 일반원리, 그리고 헌법이나 민법상 일반원리, 그리고 서울 YMCA 헌장이나 총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성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하면서 서울 YMCA 및 이사 등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5가합82852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¹⁹⁾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72655 판결

18) 현재 대법원 2009다19864호로 상고심 계류 중이다.

19) 제1심 판결은 서울 YMCA 이사회가 총회결의권을 가지는 총회원을 선정함에 있어 여성회원들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회원들의 총회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헌법 제11조 평등권 조항은 사법(私法)과 단체법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인 간의 단체의 내부관계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사법상의 일반 원칙(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서울 YMCA의 행위가 직접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은 “평등권의 실현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 보장의 토대로서 헌법 제10조에서 선언된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기본적 인권 보장의 필수적 전제이고(차별 받는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은 인종 등에 따른 차별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인권 보호의 핵심 영역”임을 분명히 한 후 “이러한 맥락에서 1985. 1. 26.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위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제외(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 YMCA의 여성회원들에 대한 총회원 자격 제한이 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느 사적 단체든지 스스로 구성원의 자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특정 성별, 종교, 인종 등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결성이나 활동도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성별, 종교, 인종에 따른 구별이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구별 없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후 특정 성별, 종교, 인종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단체 내 지위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그 성별을 이유로 총회원 자격을 부인·배제한 것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²⁰⁾ 또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의 기

20)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72655 판결은 헌법 제11조가 간접적으로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데 불과하다는 제1심 판결의 논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원리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법원이나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진다고 하여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헌법적 원리에 맞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적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위험이 있으나, 불법행위법에 따른 구제는 법원이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총회원 자격을 부인한 것이 헌법질서에 반하는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원이 직접 해당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거나 서울 YMCA에게 총회에 여성회원들을 참여시키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불법행위법에 따른 구제까지 회피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는 것이 되어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며, 그 근거의 하나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c), (e) 등에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에서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치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간접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4.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적 이행

한편 재판과정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은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2006. 10. 1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선택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적 구제절차로서 완료된 법원의 판단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경우, 특히 그것이 확정판결의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법체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에 여러 법적인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국내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과 권고가 있는 경우 곧바로 법원판결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며, 우리 법제도상 허용될 수 있는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재심제도이

다.²¹⁾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만으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위반 판단을 포섭하기 어렵다.²²⁾ 결국, 국내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협약위반 판단이 있는 경우 재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위반 판단을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법원이 재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종전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절한 이행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원회의 협약위반 판단이 있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국내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과 권고가 있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판단까지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하여 보도록 하는 기회를

21) 그 밖에도 비상상고제도 이용 방안과 확정판결을 존치시킨 채 위원회를 통해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비상상고의 경우 재심과 달리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검찰총장이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라고만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아래에서도 검찰총장은 인권이사회의 규약위반판단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비상상고제도는 비상상고 사유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그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인권이사회의 규약위반판단이 있고, 그 사유가 관련 법령의 규약위반인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비상상고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학설들 중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회계법상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이는 인권이사회 권고만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인권이사회의 보상금 지급 권고가 있는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며, 결국 시혜적인 지급도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이사회의 규약위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인권이사회의 규약위반 결정에서 보상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국가배상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위원회의 설치는 유죄판결의 확정력을 존치시킨 채 보상금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요건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유죄판결의 확정력이 존재하는 한 법관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법 체계와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통보결정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법무부, “국제인권규약상 개인통보의 국내구제방안 연구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법무부 인권과, 2005.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안의 연구 - 인권이사회 권고를 중심으로>, 2006. 4. 법무부 인권국 주최,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이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7. 9. 등이 있다.

2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판단은 사실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법적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²³⁾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이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²⁴⁾ 그러나 국제법상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기구이다. 국가보고서를 법적인 측면에서 심사하고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의 견해와 일반 논평은 국제사회에서 협약 조항에 관한 ‘권위있는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위원회가 법원이 아니며 그 견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형식적인 결론만을 내세우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²⁵⁾ 따라서 법원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협약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 및 판단,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²⁶⁾

23) 차지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안의 연구 - 인권이사회 권고를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6, 57면.

24) 정인섭,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의 회고”, 국제인권법 제3호, 국제인권법학회, 21면, 정경수, 위의 글, 86면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인권이사회 등 조약기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판결은 인권이사회가 “소론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3헌바50 결정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근로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25) 조용환, 위의 글, 98-102면. 나아가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인권조약의 의미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는 해석자’로 받아들여지는 조약기구의 견해를 무시한다면 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조약기구의 견해를 무시한 채 당사국만의 해석을 관철하는 것을 결국 조약 위반의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가? 헌법에 따라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된 조약의 의미를 국제법 위반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는가? 나아가 보편적 인권조약을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석·적용한다면 인권조약에 가입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 법원의 인권조약 해석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26) UN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거나 자국 헌법상의 인권관련규정의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견해(이근관,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한국의 실행, 국제인권법 제3호, 국제인권법학회, 64면)도 같은 맥락이다.

5. 마치며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이는 상당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종원 자격 확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아직 상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는 있으나 서울 YMCA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 부여 여부를 둘러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물론 국내인권협약이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국내법적 질서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 성과 및 과제

강 선 혜 (여성부 교류협력과장)

I.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기틀마련

1. 여성부 설립

여성부는 정부 내의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는 행정부처로 2001년 1월 설치되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을 총괄한다. 여성부의 업무 영역은 정부조직법 상 ‘정부 내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의 조정업무, 남녀차별개선업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보호업무, 성매매 피해자 예방 및 선도업무,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업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여성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 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및 기업, 언론, 정당, 노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차별의 철폐와 평등실현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잠정적 우대조치의 개발과 실시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은 첫째,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

평등하게 수립되도록 정책과정을 점검·평가·분석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조직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며, 둘째,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하고, 셋째,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 정책, 교육, 피해자 보호, 권리구제 등 인권 보장기능을 하며, 넷째, 평등, 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비정부기구, 정부부처와 협력하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안건 제출, 심의 및 표결 참여권을 가짐으로써, 국무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12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었다.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조정을 담당한다. 여성정책 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여성부장관이 부의장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무총리실장 등이 당연직 위원, 기타 부처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5인 이내의 민간위원이 위원에 포함된다.

3.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책임관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중앙행정기관에 여성

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 여성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와 해당 기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여성정책 담당관 제도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행정자치부의 중앙 6개 부처에 지정되어 해당 부처 정책의 성주류화 촉진 기능을 담당하였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여성정책의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정책의 발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1999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년간의 여성정책 시행을 평가한 결과,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된 부처의 여성정책추진이 더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가 그 부처의 주요 기능에만 관점을 두고 정책화될 때와 여성문제 의식을 갖고 여성의 상황이 고려된 여성 정책적 시각이 포함될 때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는 여성정책담당관을 확대하여, 1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II. 여성이 정부정책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

1.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2008년 말 현재 총 163억원이 조성되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은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기반 마련, 모성보호 강화 등의 정책성과를 거두었고 제2차 기본계획(2003~2007)은 성 주류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를 구비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기본계획(2008~2012)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성숙한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전략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 과제를 포함하였다.

2. 성별영향평가

정부의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2002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2006년)의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4년 시범실시 한 이후 매년 참여기관과 과제를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총 295개 기관의 1,531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계	9	10	53	85	187	314	278	720	295	1,531
중앙	6	7	37	51	38	60	37	78	31	78
지자체	3	4	16	34	149	254	226	627	248	1,437
시·도교육청	-	-	-	-	-	-	15	15	16	16

3. 성인지 예산제도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였다('06.10 공포). 성인지 예산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2010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와 여성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인지 예산 공동T/F를 구성하고 25개 기관 105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작성을 하였으며, 2009년 10월 29개 기관 195개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Ⅲ. 적극적 조치 추진을 통한 각 분야 여성의 참여확대

1. 공직분야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해서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결과 여성합격자 비율이 1999년 16.3%에서 2008년 41.6%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전환하여 시행중인데, 이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2002년부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02~'06년)을 시행하여 중앙 9.6%, 지방 6.5%를 달성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직급을 달리하여 중앙은 4급이상, 지방은 6급 이상 여성관리자에 대하여 2011년까지 각각 10%, 16.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08년

말 현재 중앙 6.1%, '08년 상반기 현재 지방 12.2%).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26.4%까지 증가했고, 2012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정치분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2005년에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음 도입하여, 현재에는 그 비율이 50%로 되어 있다. 또한 여성후보 추천 장려책으로서 여성후보를 많이 추천한 정당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중 24%(11명)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구중 67.1%(49명)가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2008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1명의 여성의원들이 선출되어 여성의원 비율이 50% 할당 이전의 5.9%에서 13.7%로 대폭 확대되었다.

IV. 양성평등 문화 확산

1. 남녀 차별적 법·제도 개선

남녀차별법령 정비사업은 조문에 남녀차별적인 성격이 있는 771건의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특히 여성차별 철폐 부분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년 제정, 관련 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06년 3월 폐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2001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특히, 2007년까지 남아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인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가 구성되고 그 가(家)는 남자를 중심으로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족제도이나, 현실적으로도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년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2003년 5월 16일 여성부의 주도하에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발족되어 민법 개정 작업을 시행한 결과, 2003년 11월 호주제 폐지 및 모의 성 선택을 허용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4년 12월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는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헌법 이념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정신을 반영한 2005. 3. 31. 법률 제 7427호로 공포된 「민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제도, 친양자 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호적제도를 대체하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와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던 호적과는 달리 ‘개인별 편성주의’에 따라 국민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그에 대한 증명서도 증명대상에 따라 5종류(가족관계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하여 각 증명서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여성부는 사회 곳곳에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2003년 6월 재단법인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성인지 정책분석과정, 성인지력 향상과정, 여성리더십 향상과정 등 13개 과정을 개설해 중앙·지방공무원, 전문강사, 여성단체, 군인, 교직원을 대

상으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08년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및 성인지 통계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 공직사회 양성평등정책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교육수요 확대에 수탁교육도 활성화하고 있다.

V.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1.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1994년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01년 여성부 신설과 함께 피해자보호 강화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해왔다.

특히, 폭력피해 여성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여성긴급전화 「1366」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성 중 인신매매·성폭력 등 피해로 전문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동시통역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06년 4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2004년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3세미

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2004년 12월 247개 경찰관서에 진술 녹화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진술녹화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진술녹화관 양성교육’, ‘진술녹화 조사기법과정’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피해자 맞춤형 조사기법 교육을 위한 ‘성폭력 수사 전문과정’을 신설, 매년 320명의 성폭력 전문 수사관을 양성 중에 있다.

’06.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가 의무화되었다. 아동성폭력 조사관의 전문화를 위해 ’07년 하반기부터 아동성폭력 ’진술녹화 자격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조사관의 진술녹화 실적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아동 진술은 매우 중요하나, 피해아동은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비일관적·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억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 진술 단계에서 아동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아동 눈높이에 맞는 조사 및 피해아동의 행동과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고자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도입하고, 2008년 3월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기법’을 개발, 일선 조사관에게 배포하여 피해아동 조사 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병원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16개 국·공립 병원 내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하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 등에게 경찰청의 수사·상담지원,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 무료변론 등 입체적 통합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서울권역에 치료와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영

남, 호남권역, 2008년 경기권역에 확대 설치·운영 중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2009년 2월 현재 300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이중 82개소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3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2009년 2월 현재 196개소의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고 8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18개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함께 상담하는 통합상담소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0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여성을 위하여 2009년 2월 현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2. 성매매 방지

성매매와 관련 여성폭력 문제 대처를 위한 노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추진실적 점검을 위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여성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추진대책점검단’을 구성·운영(’09년 1월 현재 16회 회의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성매매방지 정책 추진을 위해 ‘성매매클린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성매매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 처벌 강화와 함께 성매매 강요의 주요 미끼였던 선불금에 대한 채권 무효화, 불법이익을 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개념을 도입하여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성매매알선업주의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각 시설을 통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43개소, 그룹홈 10개소, 자활지원센터 6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29개소,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9개소 등이 운영 중이며, 탈성매매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상담에 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법률·의료 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수행하

고 있다. 그 결과 공공연한 성매매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등 성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지자체·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한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국민 대부분은 ‘성매매는 불법’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대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에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강화대책을 마련하면서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과제를 신설하고, ‘08년에는 해외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3. 이주여성 인권보호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 보호를 위해,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대상 전화상담을 8개 국어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쉼터를 2008년 4개소에서 2009년 1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의료, 법률, 출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Ⅵ. 향후 과제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법제도상의 평등을 어떻게 실제적인 평등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주류화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으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정책은

경제, 인권, 정치, 문화등과 깊이 관련되므로 여성문제가 주변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요 국가정책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류로 다루어져야 한다.

향후 여성부에서는 여성정책을 주류화하여 여성을 사회발전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①보호·시혜대상으로서의 여성정책이 아닌 능동적, 주체적 여성을 위한 정책, ②생애주기별, 분야별 다양하고 전문화된 여성정책, ③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 ④성차별개선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

곽 수 경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김 경 윤 (노동부 여성고용과장)

1.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령의 발전

□ 특별호보기 ('53~'60년대)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 보호제도 도입으로 출발
 - 산업화 초기는 특별학급, 기숙사 설치 등 특별보호에 치중

□ 복지수혜기 ('70년대~'80년대 중반)

- 경제발전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여성인력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여성근로자의 인격권과 육아지원 문제 대두
 - 시혜적 모성보호 등 여성 고용의 기반이 마련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1987년)하여 남녀차별 해소에 역점

□ 평등기반 구축기('87~'00년)

- 남녀고용평등법의 3차례 개정으로 고용평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성 실업대책을 적시에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평등 구현에는 미흡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추진

□ 고용평등 실현기 ('01 ~)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 산전후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수준의 확대와 그 비용의 사회화, 법적 용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여성 보호조항의 폐지 등

□ 고용평등 정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구축기 ('08 ~)

- 모성보호 부담의 전면 사회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양질의 단시간 근로 개발 등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마련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착 실현

2.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당면과제

(1) 여성고용 현황

□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중 41.6%를 차지

<경제활동인구 추이('09.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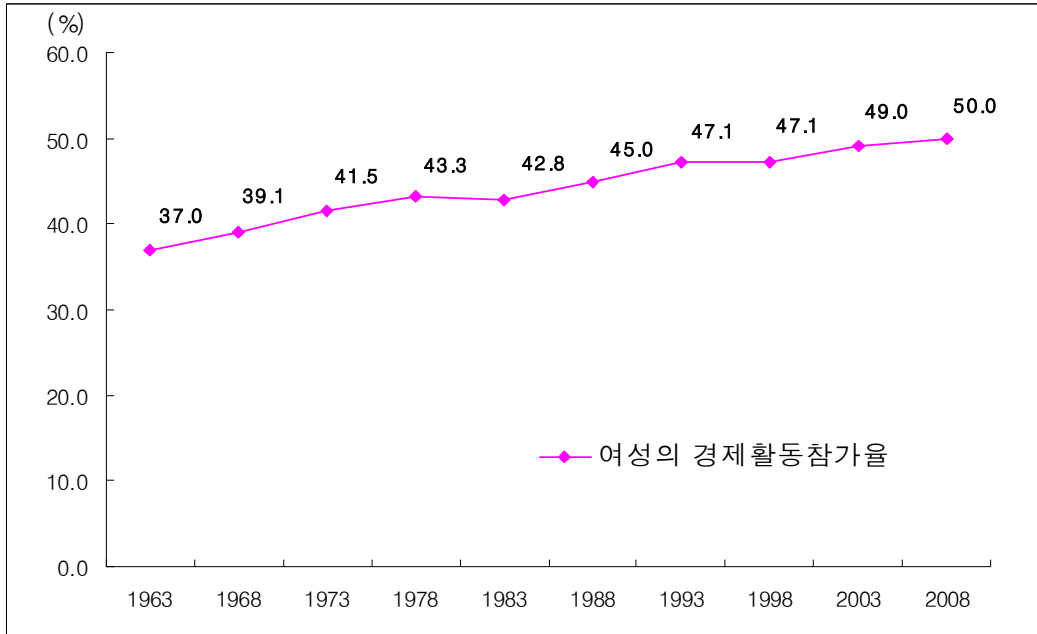
('09년 9월, 단위 : 천명, %)

구 분	계	남	여	비 고
15세 이상 인구	40,201	19,651	20,550	
경제활동인구	24,630 (100.0)	14,394 (58.4)	10,236 (41.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49.8%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3.2%
취 업 자 수	23,805 (100.0)	13,838 (58.1)	9,966 (41.9)	여성 고용률 48.5a %, 실업률 2.6% 남성 고용률 70.4%, 실업률 3.9%
임금 근로자수	16,687 (100.0)	9,580 (57.4)	7,108 (42.6)	여성 임금근로자수: 7,108 (상용: 3,136 임시: 3,069 일용: 902)

[자료] 통계청, 『KOSIS DB』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전체 여성중 경제활동참가율은 49.8%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63~'08)>



* 주: '63-'98년 구직기간 1주 기준, '03년부터의 자료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작성(OECD 기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09.2월 47.5%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소 회복되어 '09.9월 현재 49.8%

- '09.9월 여성취업자는 9,9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천명 감소
- (종사상 지위) '09.9월 상용직(134명) 및 임시직(159명) 증가폭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자영업자(-184천명) 및 일용직(-44천명)은 감소
- (산업별) '09.9월 보건·사회복지사업(151천명)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조업(-97천명)·도소매음식숙박업(-152천명)·협회개인서비스업(-69천명) 중심으로 큰 폭 감소
- (학력별) 대졸이상(+83천명)은 증가한 반면, 고졸이하(-109천명)는 크게 감소
- (연령별) 청년여성(20-29세 -84천명) 및 출산·육아기 여성(30-39세 -79천명) 근로

자 위주로 감소하고, 중년여성(40-49세)은 소폭 감소(-14천명), 준·고령여성(50-59세 +91천명) 근로자는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주요 특징

- 출산·육아 부담으로 30대 초·중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은 **M-Curve** 현상 지속 ⇨ 선진국은 역U자형
 - * 연령별 여성고용률('08) : 25~29세 69.3%, 30대 56.1%, 40대 65.8%
-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 이탈후 다시 취업하고자 할 때,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괜찮은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
 - * 기업은 숙련도가 마모된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기피, 공공 재정투입 일자리는 중장년층 중심의 생계보조형 일자리가 대부분
- 여성 임금근로자중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12.5%('07)로 OECD 평균 (25.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가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의 질도 낮은 실정
 - * OECD 연구결과, 여성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여성 경할률도 높음 (단시간근로 비중이 1%p 증가시 여성 경할률은 약 0.5%p 증가)

◇ 주요 정책과제 ① 여성일자리 확대, ②일·가정 양립기반 강화

3. 여성의 고용상 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

(1)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해소

- 직무상 특정 성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특정 성(주로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는 불합리한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욕을 높이고, 국가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2000년도부터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실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09년의 경우 6.22 ~ 7.21(1개월) 까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총 11,209개소(고평상담실-3,056개소, 지청-8,153개소) 모니터링사업장중 3.2%인 356개소에서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
 - 이중, 모집기간이 지난 167개소는 경고조치하고, 모집기간이 남은 189개소는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광고 및 광고중단 등으로 시정완료하여 사법처리는 없음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하고, 그 이후 3년 이내 재차위반시 사법처리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지시하되 시정완료하면 종결,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 최근 3년간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많이 개선 (위반비율 : '07년 9.9%, '08년 8.0%, '09년 3.2%)

최근 3년간 성차별 모집·채용 모니터링 결과

(단위 : 건)

연도	모니터링 광 고 수	차별광고수		조치내용		
			%	사법처리	경고	시정광고
'07	11,918	1,176	9.9	-	527	649
'08	10,297	826	8.0	-	193	633
'09	11,209	356	3.2	-	167	189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실현과 노력

- 1989.4.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법제화하였고,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에서 동일가치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그리고 임금차별 유형에 관해 규정

※ 제5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 ① 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 ②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 예시된 4가지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의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교육수당·통근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3. 기본급·호봉산정·승급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4.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5.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6.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7. 기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 하는 경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관련 판례 (최초 남녀차별 인정)

※ 한길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03년 3월)

회사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에 대한 임금은 성별, 학력, 연령, 경력, 기술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 남녀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미리 일률적으로 책정된 일당을 적용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임금을 낮게 정하였다.

남녀 모두 하나의 공장 안에서의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되어 협조체로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공정에 따라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사업장내에서 남녀근로자들이 하는 일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큼 실질적으로 중요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여성의 권리침해시 구제절차

○ 여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등 제기 가능

○ 최근 몇년간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행정종결이 대부분

<성희롱 및 성차별 등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내용 >

연도별	유형별(건수)			처 리 내 용			비 고
	계	성차별·육아 등 기타	성희롱	행정종결	기소	불기소	
‘04년	92	16	76	67	11	14	
‘05년	81	14	67	70	-	11	
‘06년	53	16	37	46	3	4	
‘07년	142	36	106	117	14	11	
‘08년	264	117	147	155	21	88	

※ 성차별사건 특이사항 (‘08년, 117건)

: 신광기업(택시회사, 노사간 불신) 근로자들이 78건 성차별 고소제기(혐의없음)

※ 성희롱사건 처리결과 (‘08년, 147건)

: 행정종결 108건, 과태료 15건, 검찰송치(불기소포함) 24건으로 행정종결이 대부분

(4)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산전후휴가제도 및 배우자출산휴가

○ 출산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90일(산후 45일 보장)의 보호 휴가 부여

- 산전후휴가기간중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135만원 한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
- 산전후휴가 수급자는 '02년 23천명→ '08년 69천명으로 증가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03년	‘06년	‘07년	‘08년	‘09.9월
인원	32,133	48,972	58,368	68,526	53,116
지원금액	33,522	90,886	132,412	166,631	133,580

- 출산에 대해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확산 및 출산·육아에 있어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
 - * 배우자 출산시 활용하도록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3세 미만의 영유아 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의 급여지원
 - * '08.1월 육아휴직대상 근로자 자녀 연령 상향 조정 : 만 1세→만 3세
 - *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03년 7천명→ '08년 29천명으로 증가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
 - * 육아휴직장려금 : 모든 기업 월 20만원 지원
 -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대기업 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지원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장려금 수급기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9월
육아휴직장려금	864 (6,728)	994 (7,153)	1,254 (9,423)	1,601 (11,219)	2,555 (15,890)	2,446 (14,159)
대체인력장려금	6 (5)	55 (64)	194 (392)	435 (1,154)	810 (2,488)	824 (2,516)

※ 장려금 지원 사업장수(지원금액)로 기재

- 아울러, '08.6월부터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15~30시간 이내)를 도입·운영
 - ※ 전일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과 선택적으로 활용
 - * 근로시간단축제는 제도시행초기라는 점, 사업장의 단시간근로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사용실적은 미진('09.9월말 현재 4명)
 -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 출퇴근시간 조정, 연장근로제한 등의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설치비 무상지원 및 용자, 운영비 지원
 - * '09.6월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의무사업장 155개소, 임의사업장 140개소
 - * 설치비 무상지원 : 시설전환비 사업주 1억원 한도(공동 설치시 2억원), 유구비품비 5천만원 한도(5년 1회), 우선지원대상기업 80%, 대기업 60% 지원
 - * 설치비 용자 : 최대 5억원 한도, 연리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기업 2%
 - * 운영비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에 대해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

□ 유연근무제도 확산 노력

- 아울러,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무형태 확산**을 위해 노력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등을 지원
 - * 여성고용촉진컨설팅(3억원) : '07년 9개소, '08년 9개소, '09.7월 9개소
 - * '08·'09년 2년간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기업은 4개소
 - ①매주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운영(대성실업,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개소), ②육아를 위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운영(GS텔레서비스), ③연장근로의 단축(문화유통복스)

- 앞으로 이러한 유연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과 아울러 우수사례
 - * 발굴·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
 - * NHN(네이버 운영업체, '05년 도입) :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재택근무 (1달중 3~4일 출근), 근로복지공단('08년 도입) : 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5)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보호

-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중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을 위주로 매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 계획」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주로 여성·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임산부 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 모성보호제도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
 - ※ 연도별 법위반 건수 : 2,864건('07년)→8,570건('08년)→2,328건('09.8월)
- 또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여성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임신 16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중 계약 만료시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 * 유계약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무기계약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08년 4월 3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임신·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 제도개선 경위>

- '06.7.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동 제도 시행
- '07.4.2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임신 34주” 이후에서 “임신 16주”로 지원 대상 확대,
- '08.4.3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무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인상
 - ※ 최초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 최초 6개월 매월 60만원, 다음 6개월은 매월 30만원

- 한편, 여성에게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간병·보육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회적기업 육성
 - * '09.7월말 현재 251개 ('09년 400개 목표)

-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과 더불어 유망직종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훈련과정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6)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

-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을 높이도록 유도
 - 5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동종업종 여성고용률 평균의 60%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06년 1,000인 이상→'08.3월 500인 이상) * 546개소('06) → 613개소('07) → 1,425개소('08) → 1,607개소('09)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 우수기업 : AA 제도를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표창, (대상선정) 이행실적보고서 평가결과 상위 5% 해당기업
 - ** 인센티브 : 정부표창, 정부 입찰시 가산점 부여, 조직 및 인력관리 컨설팅,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등
- '09년에는 1,607개소를 대상으로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여성 고용비율은 '07년도 말과 비교하여 0.45%p 상승하고, 여성 관리자비율을 1.62%p 상승
 - * 여성고용률(%) : 30.7('06)→32.3('07)→33.56('08)→34.01('09)
 -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 10.2('06)→11.2('07)→12.51('08)→14.13('09)
-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은 28.51%,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평균은 8.43%로 민간기업 보다 낮음
- 여성 및 여성관리자 고용률이 저조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성 고용확대를 독려
 - 여성고용관리 개선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책자 발간 배포 등 홍보 강화
 - * AA이행우수기업 사례연구('09.4~10), AA 우수기업 사례발굴('09.4~10)

-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 및 홍보
 - 우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가점부여
 -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여성고용촉진 컨설팅을 AA 적용기업에 연계하여 비용 지원 및 여성 고용환경개선비용 융자

4.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양질의 단시간근로일자리 확대

□ 공공기관 중심의 단시간근로 확산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단시간근로모델을 정립, 민간기업 선도**
 - (공무원) 육아기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활성화(현행 3년내 가능)
 - (비공무원) 민원업무 등 업무분할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단시간근로자 신규 채용 확대(사회보험 적용, 계약기간 장기)
 - * (사례) 노동부 콜센터 : 4.5시간씩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정년보장) 70명 채용
 - * (가능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업무, 콜센터 등 민원상대업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개장이 필요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관리업무 등

□ 민간기업의 단시간근로 채용 활성화 지원

- 장시간의 직무분할, 새로운 단시간 직무개발, 단시간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집중 실시
 - * '10년 단시간근로일자리창출컨설팅(7.5억)
 - * 노사공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적용할 인사관리매뉴얼 제작·확산토록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후 빈 일자리에 **상용직 단시간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 간접노동비용 : 신규근로자 고용시 월평균 노동비용의 20.9% 발생
(’08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결과)

(2)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일자리 확대

- 가사, 간병,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 돌봄서비스분야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사회적 기업 인증 확대
 - *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돌봄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방과후 학교, 직장보육시설 등 늘어나는 정책수요와 연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기관→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발전적 방향모델 정립

(3)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

-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확충
 - 보육수요가 많고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직장보육시설을 우선 확충
 - 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역사회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맞벌이가구 영아 중심으로 개방
-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근로자 혜택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을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 확대
 - * 직장보육시설 용자지원: 5→7억, 무상지원: 1→2억
 - * 취사부 인건비 지원 :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전체 시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설치시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수혜자 확대 유도
 - * 사업주 공동설치시 무상지원 2→5억(실 소요비용의 80% 지원)

(4) 임신·출산 전후의 고용불안 해소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부터 사업장 집중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 복직, 복직후 근로조건 보장 등 현장 지도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여건 개선 노력 강화
 -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강화
 -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계약 연장시 지급하는 “**임신·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 제도 **활성화** 추진(무기계약 540만원, 유기계약 240만원 지원)
 - * **홍보 강화, 지급요건 완화**(현행 임신 16주 이상→개선 : 임신중인 여성)

UN 여성차별철폐협약¹⁾ 이행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박 숙 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I. 들어가며

2002년 제5차 정부보고서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을 위한 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여성정책계획 수립, 여성발전 기금 및 정책의 채택 등에 있어서 국가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이것은 국내 여성 민간단체의 협력과 건설적 비판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서술한 점에서도 볼 때 민간단체가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나 입법과정에서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데는 더욱 그러하다.

이하는 한국NGO 참가단²⁾으로 2007년 7월 26일부터 8월2일 동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39th session에 참가한 경험과 2009. 11.20.부터 같은 해 20일까지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43th session을 위한 NGO보고서 중 여성분야 집필을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행을 위한 NGO의 활성화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

2) 민변의 소라미, 박숙란, 박재화, 한국여성연합의 김기선미, 통역으로는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참가하였다.

II. 여성차별철폐위원회 39th session에 대한 NGO의 사전준비 및 참가활동 등

1. 한국의 정부 5,6차 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제출

여성단체들³⁾이 연대하여 2007년 6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5,6차보고서에 대한 NGO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검토보고서는 총 90페이지로, 각 조항별 정부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여성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었다.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39th session NGO 참가단의 한국 NGO설명회 개최, 여성차별철폐위원들에게 NGO브리핑 진행 등 활동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참가한 한국 NGO 참가단들은 2007년 7월 30일 13:00~14:30경까지 위원들을 초대하여 한국 NGO설명회{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빈곤이슈(KTX, 이랜드 등 여성비정규직 현안 언급), 군가산점제 부활의 움직임, 국제 결혼 중개문제, 성매매방지법 관련내용, 성폭력 문제 등}를 개최하고 연이어 16:00부터 NGO session에서 국가별 NGO 대표단들의 구두 발표가 있었다. 2007년 7월 31일 10:00~18:00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사시 위원들에게 질의요청 자료 작성 및 제출, 한국 NGO 최종보고서(한국정부 발표 및 응답 내용에 대한 NGO 입장 표명, 최종 주요 권고요청안 작성 제출, 한국정부심사 회의 전·후 짧은 시간에도 위원들을 만나 한국상황에 대한 세부 설명, 권고 요청안 요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 8월 10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한국정부에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여성의 지위를 모니터링하며, 상당수가 여성인 비정규직이

3) 2007년 당시 NGO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여성단체는 9개 단체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였다.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결국 정규직을 확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라는 내용, 성매매여성들의 비범죄화와 사회재통합 및 경제적 강화프로그램 제공 권고,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초안⁴⁾을 신속히 제정하고, 외국여성을 결혼중개업자나 그 배우자의 착취와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및 조치를 발전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41항의 최종권고문을 이끌어 내었다.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43th session을 위한 NGO의 활동 개괄

56개⁵⁾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협약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43th session를 위해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친 단체들의 워크숍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약식보고서를 제출하였고, NGO대표단이 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pre-session working group)에 참가하여 위원회의 사전질문지 작성에 NGO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답변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43th session 정부 심사시 NGO대표단이 참석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로비를 통해 용산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축소, 노동권 탄압, 여성부의 권한과 자원배정의 변화가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우려하는 등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88호가, 2007.12.14, 제정되고 2008.6.15 시행되었다.

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감, 노동건강연대, 나누리+HIV/AIDS인권연대, 녹색환경소송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미디어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정의시민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과학센터,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보공유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독립영화협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민자건강연합등.

최종견해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2009년 11월 25일 ‘정부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III. 우리나라에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행을 위한 NGO의 활성화

- 1) 평상시의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둔 민간단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 필요

발제문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정의, 비차별과 평등을 입법·행정·사법이 해야 할 조치뿐만 아니라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여성차별 경험을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막연한 평등에 대한 함성이 아니라 여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NGO활동가 스스로가 담아 평등을 이루어내는 비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민간단체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민간단체가 평상시 활동 자체에 있어서도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둔 민간단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구심점 필요와 각 부분별 민간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NGO 참가단의 활발한 활동 필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4년여 만에 오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심사를 계기로 상시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을 모아내고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비판과 정부가 보지 못하는 현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민간단체들이 상호 연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열악하고 빠듯한 일정 속의 각 부분별 민간단체의 활동을 상호존중하며 의견

을 모아내고 엮어내는 구심점이 필요하고 다시 구심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다시 각 부분의 민간 활동의 전문적 영역으로 펼쳐나가게 하는 것의 반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공유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연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는 민간단체가 활동분야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는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 때 NGO 참가단으로 어떤 분야의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고 다양한 분야의 NGO활동가들이 참가하여 참가단 활동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NGO의 조기 대응

NGO보고서 제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 간에 여러 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 회기 전 실무 그룹의 질문지 작성 전에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들의 사전질문에 대한 국가의 답변에 대하여 NGO의 의견개진, 최종 NGO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 국가대표단 출석 심사시 NGO가 참석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로비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들은 NGO가 보여주는 인권의 현 상황과 견해에 대한 NGO보고서를 아주 꼼꼼히 자세하게 보며 NGO의 의견에 유심히 귀 기울이기 때문에 NGO의 활동여하에 따라 권고사항은 크게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NGO의 조기대응과 시기 시기마다 적절한 활동을 통해 정부를 자각하게 하고 위원들이 국가심사에 있어 국가 현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권고사항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4) 민간단체와 시민들에게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홍보 및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기마다 최종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실행되어 여성에 대한 비차별,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위 협약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위 협약에 대해 삶을 통해 각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활동으로 이어지며, 이를

모아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전체 민간단체의 위 협약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민전체의 평등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하고 이해한 민간단체들이 홍보를 함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 심사시 NGO보고서 등의 작성제출과 회의에 참석하는 행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종권고안에 대한 정부 이행의 모니터링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비판과 의견을 수시로 개진하여 정부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5) 민간단체간의 국내 및 국제연대 필요

각 부분별 민간단체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연대 뿐만 아니라 국제연대도 필요하다. 2007년 7월 28일 주말 뉴욕에서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IWRAW)에서 진행하는 멘토링(mentoring)프로그램에 참가하였는데 각국의 NGO들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때 NGO의 활동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각국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현황과 상황, 민간단체의 활동들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민간단체의 활동교류를 통해 선경험에 대해서는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앞선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부록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부록 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부록 4. 대한민국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 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 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

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지 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 3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

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 6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 기구에서의 피선거권
-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 8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3 부

제 10 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 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 14 조

1. 당사국은 농촌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농촌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촌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 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농촌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여성에게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마) 취업 또는 자가 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농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 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 4 부

제 15 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

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6 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다)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부

제 17 조

1. 본 협약의 이행 상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 후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가)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 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자체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 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 6 부

제 23 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 동 국에 대하여 발효 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 24 조

당사국은 본 협약 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6 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 28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성에 기인한 구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국제인권규약들과 다른 국제인권규범들이 성에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동 협약 당사국들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지체없이 추구하기로 동의한 점을 상기하며,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약당사국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제2조

통보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의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될 수 있다. 통보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리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동의를 수반한다.

제3조

통보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익명이어서는 아니된다.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 가.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 나. 그것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다. 그것이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그 사안의 실체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
 - 라. 그것이 통보 제출권의 남용인 경우
 - 마.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5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1. 위원회가 관련 당사국을 거명하지 아니한 채 통보를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해당 개인이나 개인들이 그들의 신원을 관련 당사국에게 밝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를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어 위원회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 이 정보를 고려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3.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과 함께 동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4.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견해를 적절하게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답변을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1.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동 정보의 심사에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과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긴급히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위원 중

한명 또는 수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9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8조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1. 각 당사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국은 그 관할 하의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또는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위원회는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자신

의 활동을 요약하여 포함한다.

제13조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며, 특히 그 당사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14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르는 의사규칙을 마련한다.

제15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6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이 의정서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폐기 발효일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통보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가. 이 의정서에 따른 서명·비준 및 가입
-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 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

제21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 · 중국어 ·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2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본을 송부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여성차별철폐에 관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들

- 일반권고 1: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 일반권고 2: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 일반권고 3: 교육 및 홍보 캠페인
- 일반권고 4: 유보
- 일반권고 5: 잠정적 특별 조치
- 일반권고 6: 효과적인 국가 조직과 홍보
- 일반권고 7: 자원
- 일반권고 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
- 일반권고 9: 여성의 상황에 관한 통계자료
- 일반권고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
- 일반권고 11: 보고의무를 위한 기술적 자문 서비스
- 일반권고 12: 여성에 대한 폭력
- 일반권고 13: 동일노동 동일임금
- 일반권고 14: 여성 할례
- 일반권고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계획에 있어서의 여성차별방지
- 일반권고 16: 시골과 도시의 가족기업에서의 무보수 여성 근로자
- 일반권고 17: 국내총생산에서 무보수 가사활동의 측정, 정량화 및 그에 대한 인정
- 일반권고 18: 장애 여성
- 일반권고 19: 여성에 대한 폭력
- 일반권고 20: 동 협약에 대한 유보
- 일반권고 21: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
- 일반권고 22: 동 협약 제20조의 개정
- 일반권고 23: 정치적 및 공적 생활
- 일반권고 24: 동 협약 제12조(여성과 보건)
- 일반권고 25: 동 협약 제4조 1항 (잠정적 특별 조치)

여성차별철폐에 관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21조 1항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정보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권고들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제안과 일반권고들은 당사국들의 논평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25건의 일반권고를 채택하고 있다.

제5차 회기 (1986)*

일반권고 1: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동 협약의 제18조에 기하여 제출된 최초 보고서는 제출일까지의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그 후에, 보고서는 1차 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 적어도 매 4년마다 제출되어야 하며, 동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한 장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 문서 A/41/45에 포함.

제6차 회기 (1987)*

일반권고 2: 당사국들에 의한 보고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제출한 일부 최초 보고서들이 관련 당사국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지침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업무처리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왔다는 점을 유념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동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보고서를 준비하는 당사국들은, 1983년 8월에 채택된 일반 지침(CEDAW/C/7)상의 형식, 내용, 보고일자를 지켜야 한다.
- (b) 당사국들은 1986에 채택된 일반권고의 다음 규정을 지켜야 한다.

“동 협약의 제18조에 기하여 제출된 최초 보고서는 제출일까지의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그 후에, 보고서는 최초 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 적어도 매 4년마다 제출되어야 하고, 동 협약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된 장애들과 그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치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 (c) 당사국의 보고서를 보충하는 추가정보는 적어도 그 보고서의 상정이 예정된 회기 시작 3개월 전에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 문서 A/42/38에 포함.

제6차 회기 (1987)*

일반권고 3: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1983년부터 당사국들이 제출한 34개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음을 고려하고,

비록 보고서들이 서로 다른 개발수준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보고서들이, 차별을 영속시키고 동 협약 제5조의 이행을 방해하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의 존재와 사회문화적 요소의 다양한 양상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편견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방해하는 현재의 관행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 문서 A/42/38에 포함.

제6차 회기 (1987)*

일반권고 4: 유보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들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회기 중 검토하였고,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유보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고,

1988년 뉴욕에서 열릴 다음 회의에서 유보문제를 상정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결정과,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그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재고하기로 한다는 최종 제안들을 환영한다.

* 문서 A/42/38에 포함.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5: 잠정적 특별 조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 예비 문건과 답변서들은 차별적 법률들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남녀 간의 사실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동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동 협약의 제4조 1항을 상기하고,

당사국들이 교육, 경제, 정치, 고용 영역에서의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제적 조치, 우대 혹은 할당제도와 같은 잠정적 특별 조치들을 더욱 많이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6: 효과적인 국가 조직과 홍보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고려하였고,

유엔 총회 결의 1987년 11월 30일자 42/60을 주목하고,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정부의 고위급에서, 아래에 대한 적절한 자원과 위임 및 이하의 권한을 가진 효과적인 국가 조직, 기구, 절차를 설립하고/혹은 강화한다.
 - (a) 모든 정부 정책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언한다.
 - (b)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시한다.
 - (c)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과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력한다.
2. 동 협약과 제18조에 기하여 당사국들로부터 제출된 보고서, 본 위원회의 보고서가 관련 당사국의 언어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3. 동 협약과 본 위원회의 보고서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유엔 사무총장과 홍보부의 조력을 구하도록 한다.
4. 본 권고에 관해서 취해진 조치들을 당사국들의 최초 보고서와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 문서 A/43/38에 포함.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7: 자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당사국들로 하여금, 비엔나에서 본 위원회의 장래 회기를 개최하는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총회 결의 40/39, 41/108, 특히 42/60의 제14항을 주목하고,

인권 조약의 이행과 조약 기구들의 사무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 센터와 사무국의 사회개발 및 인도적 업무 센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하는, 총회 결의 42/105, 특히 제11항을 유념하고,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네바 소재 인권 센터와 비엔나 소재 사회개발 및 인도적 업무 센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하여 계속 지지한다.
2.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가 뉴욕과 비엔나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
3.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가 동 협약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유용한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특히 회기의 준비기간과 회기 중에 본 위원회를 돕기 위해 유용한 전일 근무 직원(full-time staff)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4. 당사국들은 추가 보고서와 자료들이 기한 내에 유엔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적절한 시기에 본 위원회에 배포,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제7차 회기 (1988)*

일반권고 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동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들의 보고서들을 고려하였고,

당사국들이, 동 협약 제8조의 완전한 이행과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정부를 대표할 기회를 가지는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협약 제4조에 따른 추가적인 직접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문서 A/43/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9: 여성의 상황에 관한 통계자료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동 협약의 각 당사국들에서 여성이 실제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통계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보고서를 제출한 다수 당사국들이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보아왔고,

당사국들은, 국가인구조사나 기타 사회, 경제의 서베이를 기획하는 국가통계기구가 조사 자료를 백분율과 절대수치에 있어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특정 영역에서 여성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 문서 A/44/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1989년 12월 18일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일임을 고려하고,

그 10년 동안, 동 협약이 유엔이 회원국 내 사회에서 성별간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들 중 하나임이 증명되었음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국가 조직과 홍보에 관한 일반권고 6(제 7차 회기, 1988)을 상기하고,

동 협약 채택 제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당사국들이 이하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 각국의 주요 언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기 위한 회의 및 세미나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각국에서 동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 당사국의 국내 여성기구들에게 동 협약과 그 이행에 관련된 홍보 캠페인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비정부기구들로 하여금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 동 협약과 그 이행을 홍보하도록 독려하며,
3. 유엔과 유엔 체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관계된 동 협약의 원칙들, 특히 제8조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독려하고,

* 문서 A/44/38에 포함.

4. 동 협약과 그 이행에 관련하여 유엔의 모든 공식 언어로 된 출판물 및 기타 간행물들을, 전문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발행하고 공표함으로써 동 협약 채택 제10주년을 기념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동 협약에 대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여성진흥국과 비엔나 소재 유엔사무소의 사회개발 및 인도적 업무센터에 유용한 필요 자원을 조성한다. 상기 센터는 여성을 위한 10년간의 유엔의 업적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회의, 즉 ‘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최초로 발행되었던 본 위원회 보고서 (A/CONF.116/13)를 갱신하고 출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분석을 준비한다.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1: 보고의무를 위한 기술적 자문 서비스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1989년 3월 3일까지, 96개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음을 유념하고,

상기 일자까지 60개의 최초 보고서와 19개의 2차 정기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36개의 최초 보고서와 36개의 2차 정기 보고서가 1989년 3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사무총장이 현재의 자원범위와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내에서, 국제인권 규약들에 따른 자국의 보고 의무를 실행하는데 있어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총회 결의 43/115, 제9항의 요구를 환영하고,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18조에 따른 보고의무이행을 요구받은 당사국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훈련 세미나를 포함한 기술적인 자문 서비스 프로젝트를 독려, 지지하고 또한 그 프로젝트에 협력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 문서 A/44/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2: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가정에서, 직장 혹은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도록 요구하는 동 협약의 제2조, 5조, 11조, 12조 및 16조를 고려하고,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88/27의 내용을 유념하고,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1.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성폭력, 가정 내 학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
2. 이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채택된 기타 조치들.
3. 공격 혹은 학대의 여성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실재.
4.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사건 및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통계자료.

* 문서 A/44/38에 포함.

제8차 회기 (1989)*

일반권고 13: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00호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대다수 당사국들에 의하여 비준되었음을 상기하고,

1983년부터 당사국들의 51개의 최초 보고서와 5개의 2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해왔음을 또한 상기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많은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극복하고, 동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당사국들의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아직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00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비준을 독려한다.
2. 당사국들은, 여성들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직종들과 남성들이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직종들에서, 상이한 본질을 가진 직종들의 가치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성 중립적 기준에 입각한 직업평가체계의 연구, 개발 및 채택을 검토하여야 하고, 당사국들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 보고서에 성취한 결과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실행 가능한 한, 이행 기구의 설립을 지지하고, 그들이 가입한 집단적 협약의 당사국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 문서 A/44/38에 포함.

제9차 회기 (1990)*

일반권고 14: 여성 할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 할례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기타 전통 관행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인권위원회와 소수자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들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 국내적 여성기구들, 비정부기구들,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전문기구들, 유엔아동기금이, 여성 할례와 같은 전통 관행들이 여성과 아동에 대하여 심각한 건강 및 기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특히 잘 보여주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전통 관행들에 관한 특별 실무 그룹의 연구 및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 관행들에 관한 특별 보고자의 연구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여성 자신이 여성과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는 관행들을 확인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들은 여성과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여성 할례와 같은 악습이 계속되도록 하는 문화적, 전통적, 경제적 억압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문서 A/45/38과 정오표에 포함.

(a) 당사국들은 여성 할례 관행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대학들, 의료 및 간호 단체들, 국내적 여성기구들 혹은 기타 기구들에 의한 상기 전통 관행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보급.

국내적,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 할례와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관행들을 근절하려는 여성기구들에 대한 지지.

여성 할례를 근절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협력하는 미디어와 예술작품들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정치가, 전문가, 종교 및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격려.

여성 할례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에 입각한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의 도입.

(b) 당사국들은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여성 할례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전략들을 자국의 국내보건정책에 포함시킨다. 그러한 전략들은 여성 할례의 해로운 효과를 설명하여야 하는, 전통적인 산파를 포함하는 보건 인력에 대한 특수한 책임 부과를 포함할 수 있다.

(c) 당사국들은 전통적 악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개하여 온 시도들을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 유엔 체제하의 적절한 기구들로부터 원조, 정보 및 조언을 구한다.

(d) 당사국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10조 및 12조에 기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국 보고서에 여성 할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제9차 회기 (1990)*

일반권고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국가 계획에 있어서의 여성차별방지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전 세계적 유행과 여성의 권리 실행측면에서 에이즈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들 모두의 잠재적 효과들에 대하여 주의를 갖게 한 정보를 고려하였고,

세계보건기구 및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관련된 기타 유엔 기구들, 기관 그리고 조직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와 자료들, 특히, 사무총장이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여성 진출에 미치는 AIDS의 영향에 관한 기록과 1989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회의 최종 문서를 존중하고,

1988년 3월 13일자 “HIV 감염자와 AIDS 보균자와 관련된 차별방지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 WHA 41.24”와 1989년 3월 2일자 “보건영역에서의 차별대우방지에 관한 인권위원회 결의” 1989/11, 그리고 특히 1989년 11월 30일자 “여성, 아동 및 AIDS에 관한 파리선언”에 주목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AIDS의 날, 1990년 12월 1일의 주제를 “여성과 AIDS”로 하기로 공표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당사국들은, 특히 여성과 아동에 있어서 HIV의 감염과 AIDS의 위험 및 그 영향

* 문서 A/45/38에 포함.

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보급하려 노력을 강화한다.

- (b) AIDS 퇴치 프로그램들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필요 및 여성의 출산기능과 일부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을 HIV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관련된 요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c) 당사국들은 주요한 보건의료에서의 실제적인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HIV의 감염예방 분야에서 여성들의 치료사적, 보건복지사적, 교육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 (d) 모든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12조에 기하여 제출되는 자국 보고서에, AIDS가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및 감염된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AIDS에 대응하여 여성에게 행해지는 특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제10차 회기 (1991)*

일반권고 16: 시골과 도시의 가족기업에서의 무보수 여성 근로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2조 (c)와 제11조 (c), (d), (e)와 여성의 상황에 관한 통계적 자료에 대한 일반권고 9(제8차 회기, 1989)의 내용을 유념하고,

당사국에서 높은 비율의 여성들이 보통 가족 내 남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보수와 사회보장, 사회급여를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가족기업 내의 무보수 여성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고,

무보수 노동은 동 협약에 위배되어 여성에 대한 착취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가족기업 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여성의 법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 (b)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기업 내에서 보수, 사회보장 및 사회급여 없이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그 자료를 포함시킬 것.
- (c)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는 기업 내에서 보수, 사회보장 및 사회급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문서 A/46/38에 포함.

제10차 회기 (1991)*

일반권고 17: 국내총생산에서 무보수 가사활동의 측정, 정량화 및 그에 대한 인정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11조를 유념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의 120항을 상기하고,

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무보수 가사활동의 측정과 정량화가 사실상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보여준다는 점을 확신하고,

그러한 측정과 정량화가 여성의 발전과 관련된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유엔통계위원회의 제21차 회기에서 이루어진 국가 회계 체계(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최신 개정과 여성에 관한 통계의 개발에 관한 논의를 주목하고,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여성의 무보수 가사활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와 실험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 예를 들어, 국가 가구조사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시간사용 조사의 실시 및 가정과 노동시장 두 곳 모두의 활동에 투입된 시간을 성에 따라 분류한 통계의 수집.
-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 문서 A/46/38에 포함.

전략”의 조항들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에 여성의 무보수 가사 활동을 정량화하고 포함시키는 조치들을 취할 것.

- (c) 국가 회계에 여성의 무보수 가사 활동을 편입시키는 데 있어 이루어진 진전 및 무보수 가사 활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조사와 실험연구에 대한 정보를 동 협약 제18조에 기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제10차 회기 (1991)*

일반권고 18: 장애 여성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특히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3조를 특히 고려하고,

당사국의 60개 이상의 정기 보고서를 고려한 바, 장애 여성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장애 여성들이 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에서 비롯된 이중 차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의 제296항에서 장애 여성은 “특별 우려영역 (areas of special concerns)”라는 표제 하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간주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1982)에 대한 지지를 확신하고,

당사국은 정기 보고서에서 장애 여성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즉 교육과 고용,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문서 A/46/38에 포함.

제11차 회기 (1992)*

일반권고 19: 여성에 대한 폭력

배 경

1. 성에 근거한 폭력은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을 기초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여성의 자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2. 1989년, 본 위원회는 국가들이 자국의 보고서에 폭력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도록 권고하였다(일반권고 12, 제8차 회기).
3. 1991년 제10차 회기에서, 본 위원회는 제11차 회기 중 동 협약 제6조에 대한 토의 및 검토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여성 착취와 관계된 동 협약의 다른 조항들로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주제는 1990년 12월 18일자 총회 결의 45/155에 의해 소집된 1993년 세계인권회의를 예상하고 선택된 것이었다.
4.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 성에 근거한 폭력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동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국가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5.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동 협약에 따른 보고 시에 성에 근거한 폭력과 관련된 본 위원회의 이하의 논평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반논평

6. 동 협약은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차별의 정의는 성에 근거한 폭력을 포함하는데, 즉 이 때 폭력이라 함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해지거나 혹은 폭력이 남성에게 비해 여성에게 훨씬 더 불균형한 영향

* 문서 A/47/38에 포함.

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위하나 고통,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 강요 및 기타 자유의 박탈을 가하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성에 근거한 폭력은 협약의 어떠한 규정이 명확히 폭력을 언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 협약의 특정 규정들을 위반할 수 있다.

7. 성에 근거한 폭력은 일반 국제법 또는 인권 협약들에 기하여 여성이 인권과 기본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동 협약 제1조의 해석 하에서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다음과 같다.

- (a) 생명권.
- (b)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잔혹한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c)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 충돌 시 인도적 규범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d) 인간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 (e) 법률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f) 가족 내에서 평등할 권리.
- (g)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 (h) 정당하고 우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8. 동 협약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한 폭력은 동 협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제인권법과 기타 협약들에 기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9. 그러나 동 협약상의 차별이 정부에 의해서 혹은 정부를 대신하여 취해지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 협약 제2조 (e)항에서는 당사국이 여타 사람, 조직 혹은 기업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과 특별한 인권 협정들 하에서, 국가는 역시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폭력행위를 적발, 처벌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지급하기도 한다.

동 협약의 특정 조항들에 대한 논평

제2조와 3조

10. 제2조와 3조는 제5조와 6조에 기한 특정 의무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시켜야 하는 종합적인 의무를 창설한다.

제2조 (f)와 10조 (c)

11.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거나 전형적인 성역할을 지닌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태도는 가족 내 폭력과 학대, 강제 결혼, 지참금 살인, 염산 공격(acid attack), 여성 할례와 같은 폭력이나 강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관행들을 지속시킨다. 그러한 편견과 관행은 성에 근거한 폭력을 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제의 한 형태로서 정당화한다.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에 대한 이와 같은 폭력들의 효과로서 여성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향유, 행사, 인정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논평은 성에 근거한 폭력들의 결과로서 현실적 혹은 위협적인 폭력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 유지를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열악한 정치 참여 수준과 낮은 교육, 기술, 노동 기회의 수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2. 이러한 태도는 또한 여성을 한 개인으로 보기 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포르노의 만연과 성적 묘사, 기타 여성의 상업적 이용을 조장한다. 이는 또 다시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6조

13. 당사국은 제6조에 기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여성 매춘을 이용한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4. 빈곤과 실업은 여성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기존의 인신매매 형태에 더하여 섹스 관광, 개발도상국 여성들을 선진국의 가사 노동에 채용하는 것,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외국 남성간의 계획 결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적 착취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여성의 평등한 권리 향유와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그것은 여성을 폭력과 학대의 특수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
15. 빈곤과 실업은 어린 소녀들을 포함하여,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에 빠져들게 한다. 매춘은 여성의 위치를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불법적으로 만들기 때문

에 특히 치명적인 폭력이 된다. 그 여성들도 강간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법의 평등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16. 전쟁, 무력충돌 그리고 영토 점령은 매춘과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폭행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특수한 보호와 처벌 조치들을 필요하게 한다.

제11조

17. 고용 평등은 여성이 작업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될 때 심각하게 훼손된다.
18.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접근과 같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성적인 언사 (sexually coloured remarks), 포르노를 보여주거나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그러한 행동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보건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여성이 자신의 항의로 인하여 채용, 승진을 포함하여 고용 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믿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적대적 작업환경을 형성하게 될 때에는 차별적인 것이 된다.

제12조

19. 당사국은 제12조에 기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다.
20. 일부 국가에는 문화와 전통에 의하여 지속된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해하는 전통적인 관행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행들은 임신부에 대한 음식물 제한과 남아 선호, 여성 할례 혹은 성기 절단(genital mutilation)을 포괄한다.

제14조

21. 시골에 사는 여성들은 다수의 시골 공동체에서 강조되는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성에 근거한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다. 시골 지역사회 출신 소녀들은 그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시골 지역사회를 떠날 때 특히 폭력과 성적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제16조 (및 제5조)

22. 강제적인 불임과 낙태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성이 자신의 자녀들의 숫자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23. 가족 내 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태 중 가장 악의적인 것 중 하나이다. 그것은 모든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 가족 관계에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은 구타, 강간, 기타 다른 형태의 성폭행, 정신적인 폭력 등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지속되어 온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 회피도 폭력과 강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여성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고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여성의 가정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침해한다.

특별권고

24. 이 논평의 견지에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당사국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모든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b) 당사국은 가정 폭력, 학대, 강간, 성폭력, 기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한 법이 모든 여성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재판관과 법집행관, 기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성 훈련(gender-sensitive training)이 중요하다.
 - (c) 당사국은 폭력의 범위, 원인, 영향과 폭력을 방지하고 취급하는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통계와 조사의 편찬을 장려해야 한다.
 - (d) 매체들이 여성에 대한 존중을 증시하고 증진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e)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지시키는 사고방식, 관습과 관행의 본질과 범위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폭력들에 대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그들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해온 조치들과 그러한 조치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 (f) 그러한 사고방식과 관행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국가들은 여성의 평등을(권고 3, 1987) 해하는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

과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 (g)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방 및 징벌 조치들이 필요하다.
- (h)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모든 이러한 문제점들과 형벌규정, 예방 및 재활 조치들을 포함하여, 매춘에 종사하였거나 인신매매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 온 조치들에 대해서 서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의 실효성도 서술하여야 한다.
- (i) 효과적인 청원절차와 배상을 포함하는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j) 당사국은 성희롱에 대한 정보와 성희롱 및 직장에서의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기타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자국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k) 당사국은 가족 내 폭력, 강간, 성폭행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난처 제공, 특히 숙련된 보건 인력(health workers), 재활 및 상담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수립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l) 당사국은 여성 할례와 같은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여성 할례(권고 14)에 관한 본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 (m) 당사국은 출산과 생식에 관한 강제를 방지하고 여성이 출생률 조절과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낙태와 같은 위험한 의료 시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 (n)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정도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하고, 취한 조치들과 그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 (o) 당사국은 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시골 여성에게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격리된 공동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특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p)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은 직업훈련, 고용기회제공 및 가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대한 감시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q) 당사국은 시골 여성들이 처한 위험,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의 정도와 성격, 그들의 필요와 지원 및 기타 서비스,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 (r) 가족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정 폭력의 경우 민사 구제와 필요한 형사 처벌.

여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에 관하여 명예 변호를 막기 위한 입법.
가족 내 폭력 피해자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피난처 제공, 상담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서비스.

가정 폭력을 가해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근친상간이나 성적 학대가 일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 (s) 당사국은 가정 폭력과 성적 학대의 정도와 그에 대응하여 취해진 예방적, 징벌적, 구제적 조치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 (t) 해당 당사국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응하여 여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기타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가족 내 폭력과 학대, 성폭행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응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 제재, 배상적인 민사 구제 규정을 포함하는 실효적인 법적 조치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공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예방 조치들.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 제공, 상담, 사회복귀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호 조치들.

- (u) 해당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에 근거한 폭력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서에는 폭력의 각 유형별 발생 빈도와 피해 여성에게 그러한 폭력이 미친 영향에 대한 모든 유용한 자료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 (v) 해당 당사국의 보고서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해져온 법적, 예방적, 보호 조치들과 그러한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차 회기 (1992)*

일반권고 20: 동 협약에 대한 유보

1.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일반권고 4에서도 받아들여진 제28조 2항에 관련한 동 협약의 유보에 관한 당사국의 제4차 회의 결과를 상기했다.
2. 본 위원회는 1993년 세계 인권 회의를 위한 준비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당사국은
 - (a) 다른 인권 조약들에 대한 유보의 맥락에서 동 협약에 대한 유보의 유효성과 법적 효과의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 (b) 모든 인권 조약들의 이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유보를 재고하여야 한다.
 - (c) 다른 인권 조약들의 유보에 관한 절차와 견줄만한 유보 절차를 동 협약에 도입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문서 A/47/38에 포함.

제13차 회기 (1994)*

일반권고 21: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총회 결의 34/180, 부속서)은 사회와 가족 내에서 여성 인권이 평등함을 확인한다. 동 협약은 인권에 관련된 국제 조약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다른 협약과 선언들 역시 가족과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세계인권선언(총회 결의 217/A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결의 2200 A (XXI), 부속서),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결의 1040 (XI), 부속서), “혼인, 혼인의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의 합의에 관한 협약”(결의 1763 A (XVII), 부속서) 및 그에 대한 후속 권고(결의 2018 (XX))와 “여성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진보 전략”이 포함된다.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이미 위에서 언급된 협약과 선언들의 요체가 되는 여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하여 상기한다. 더 나아가 동 협약은 남성과 여성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케 하는 문화와 전통의 중요성과 여성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인정한다.

배경

4. 1994년은 총회 결의 44/82에서 세계 가족의 해로 정해진 바 있다. 본 위원회는 곧이어 개최될 국가 기념 의식을 지지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5. 본 위원회는 세계 가족의 해를 맞이하여,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특별한 비중을 두고 있는 동 협약의 세 조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 문서 A/49/38에 포함.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논평

6. 국적은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결정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들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또한 국적은 정주를 근거로 취득하거나 혹은 무국적과 같은 인도적 이유로 부여되기도 한다. 국적자나 시민권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여성은 투표권 혹은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고 공직 급부와 거주선택에의 접근을 차단당하여 왔다. 국적은 성인 여성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여야 하고 혼인이나 혼인 해소 혹은 부(夫)나 부(父)의 국적 변경을 이유로 하여 임의적으로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

제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동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평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논평

7. 여성이 전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재정적 신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혹은 부 또는 남성 친족의 동의나 보증에 의해서만 상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 여성은 법적 자치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여성이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여성을 자신의 사업에 대한 법적 운영 또는 여타 형태의 계약 체결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과 피부양인을 부양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8. 일부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법에 의해서 또는 법적 자문에 대한 접근이나 법원에 구제를 구할 능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여성의 증인 자격 혹은 증거력이 채택이나 비중에 있어서 남성의 그것에 비해 미약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법률이나 관습은 여성이 재산을 평등하게 보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적으로 제한하고, 공동체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귀중한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해한다. 국가가 여성의 법적 능력을 법률로써 제한하거나 혹은 개인이나 기구를 통하여 제한하게 하는 경우, 국가는 여성이 갖는 남성과 평등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여성이 자신과 피부양인을 부양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9. 보통법계 국가에서 주소(domicile)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국가에 주재하고자 하는가와 어느 관할권에 속하는가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본래 주소는 아동의 경우 부모를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고,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이 주재하는 국가나 영구히 주재하고자 하는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적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의 보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여성이 언제나 법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적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주소는, 여성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여성의 의지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남성과 동일하게 여성이 주소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여성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여성이 고유한 출입국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0. 타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이주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파트너,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논평

공적 및 사적 생활

11. 역사적으로,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 인간의 활동은 다르게 고찰되어 왔고 그에 상응하여 규율되어 왔다. 모든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적인 혹은 가정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여성은 오랫동안 그들의 활동이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12. 그러한 활동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귀중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여성에게 상이하고 차별적인 법률 혹은 관습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 당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법률상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그로 인해 여성은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가족과 사회에서 평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법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곳에서도, 모든 사회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동 협약 제2조, 5조, 24조, 특히 제16조상의 정의와 평등의 원칙은 침해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

13. 가족의 형태와 개념은 국가마다, 심지어 한 국가내의 지역 간에도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국가의 법적 체계, 지역, 관습 혹은 전통이 무엇이든 간에 가족 내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는 법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모두 동 협약 제2조에서 요구한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일부다처 혼(婚)

14. 당사국의 보고서들은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일부다처제가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다처 혼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할 권리에 위배되고, 여성과 그들의 피부양인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재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지되고 금지되어야만 한다. 동 협약은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일부 당사국들에서 사(私)법(personal) 혹은 관습법의 형태로 일부다처 혼이 허용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동 협약 제5조 (a)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16조 1항 (a) 및 (b)

15.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헌법과 법률이 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관습과 전통 그리고 이러한 법률 이행의 실패는 동 협약에 위배되고 있다.
16.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여성의 삶과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존엄과 평등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해 보면 관습, 종교적 믿음 혹은 특정 인종 집단의 민족적 기원 등에 근거한 강제 결혼

이나 강제 재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혼인이 금전의 지급이나 신분상승을 위하여 계획되는 것이 허용되고, 한편으로 가난한 여성들은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여성의 연령 혹은 상대 남성과의 친족관계 등의 근거에 따른 합리적 제한을 두고, 여성이 혼인 시점, 혼인 여부, 혼인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제16조 1항 (c)

17.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동 협약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기 보다는 보통법의 원칙들, 종교 혹은 관습법의 적용에 기하여 기혼자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인과 관련된 법과 관행의 다양성은 여성에게 혼인관계 내에서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갖는 것을 변함없이 제한하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한 제한은 종종 남편이 가족의 가장 및 최고 결정권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따라서 이는 동 협약의 규정에 위반된다.
18. 더욱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혼인은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 혼 관계에 놓인 여성은 가정생활 및 수입과 자산을 공유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녀와 가족 구성원들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있어서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제16조 1항 (d) 및 (f)

19. 제5조 (b)에 규정된 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 부양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총회 결의 44/25, 부속서)에 포함되어 왔고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국가는 아동의 부모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결합하의 자녀들은 항상 혼인중의 자녀들과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모(母)가 이혼하였거나 별거중인 경우 많은 부(父)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 부양의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

20.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책임의 공유는 법과 후견인과 피후견인, 신탁, 입양의 법적 개념들을 통하여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혼인의 지위 및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양쪽 부모 모두가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도록 국내법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1항 (e)

21.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책임은 여성이 교육, 고용 및 자기 개발에 관련된 다른 활동들에 접근할 권리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또한 여성에게 불평등한 과업의 부담을 준다. 자녀의 수와 터울도 여성들의 생활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자신의 자녀들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 일부 보고서는 강제적인 임신, 낙태 혹은 불임 시술과 같이,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강압적인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배우자나 파트너와 상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부모, 파트너 혹은 정부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피임 수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은 동 협약 제10조 (h)에 규정된 대로 피임 수단과 그 용법, 성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그리고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23. 출생률의 자발적 규제를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으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 개발, 복지가 증진된다는 데 대한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보건의 일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고, 인구증가에 대한 자발적인 규율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하도록 한다.

제16조 1항 (g)

24. 안정된 가정은 평등, 정의 그리고 각 구성원의 개인적인 자기실현원칙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각의 일방은 동 협약 제11조 (a), (c)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능력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나 고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각각의 일방은 자신의 이름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개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터 자신의 존재를 구별 지을 수 있게 된다. 법 혹은 관습을 통해서 여성이 혼인이나 그 해소 시에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 여성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 된다.

제16조 1항 (h)

25.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는 제15조 2항의 권리와 중첩되고 그 권리를 보충하는데, 제15조 2항은 여성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26. 제15조 1항은 법 앞의 양성 평등을 보장한다. 재산을 소유, 관리,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이 재정적 독립을 향유하도록 하는 여성 권리의 핵심이며,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적절한 주거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다.
27. 농지개혁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종족적 기원을 가진 집단들에게 토지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토지를 재분배 받을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신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8.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비율의 여성이 미혼이거나 이혼을 하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 남성이 혼자 가족인 여성과 아동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산의 분배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불평등도 명백히 비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혼인, 사실혼 관계의 해소 혹은 친족의 사망에 기해 남성이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도록 보장하는 어떠한 법이나 관습도 차별적이며, 여성이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며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심각한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29. 이상의 모든 권리는 여성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부부 재산

30. 혼인 중 혹은 사실혼 관계 중 그리고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남편과 재산을 균등한 지분을 소유할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여성의 능력은 법적 선례나 관습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31. 여성에게 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법원이 그것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 혹은 이혼 시에 여성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남성에 의해 관리되게 될지도 모른다. 부부 공동 재산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혼인 중 혹은 사실혼 관계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매매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여성과 상의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없다. 이것은 재산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수입의 처분에 대한 여성의 통제능력을 제한한다.
32. 일부 국가에서는 부부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혼인 중 획득 재산에 대한 재정적 기여가 더욱 강조되는 반면, 자녀 양육, 연장자인 친족 봉양 및 가사부담의 이행과 같은 여타의 기여는 축소된다. 아내가 행하는 그러한 비재정적 기여들은 남편으로 하여금 소득과 재산증식활동을 가능케 한다.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는 동일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33. 많은 국가에서 사실혼 관계 중 축적된 재산은 법률상 혼인 중 획득된 재산과 동일한 토대에서 취급되지 않는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변함없이 여성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몫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의 존재와 무관하게 기혼 혹은 미혼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재산법 및 관습은 폐지되고 방지되어야 한다.

상속

34. 당사국의 보고서에는 동 협약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884D(X X X IV)에 규정된 대로 여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속법에 관련된 법적 또는 관습 규정들에 대한 논평을 수록하여야 한다. 동 이사회의 상기 권고에는 국가들이 고인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재산에서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동일한 승계 순위를 부여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 규정은 일반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35. 상속 및 재산권에 관하여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과 관행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불공평한 취급의 결과로, 여성은 남편 혹은 부(父)의 재산에 대하여 남성이나 아들이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받게 된다. 일부 경우에, 여성은 제한적이고 통제된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고인의 재산으로부터만 수입을 얻게 된다. 종종 미망인의 상속권은 혼인 중 획득 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소유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한 규정들은 동 협약에 위반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제16조 2항

36.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에 걸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은 국가들이 여성 아동을 차별하고 그들에 위해를 가하는 현재의 법과 규정들은 폐지하고 관습과 관행들은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16조 2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들은 당사국이 미성년자들 간의 혼인을 허용하거나 그에 유효성을 부여하는 것을 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문맥에서, “아동이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성년을 더 어린 나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와 비엔나 선언의 규정들을 유념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혼인의 최소 연령이 18세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혼인할 때, 그들은 중대한 책임에 직면한다. 결론적으로 혼인은 그들이 완전한 성숙과 행위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성년자 특히 소녀가 혼인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 소녀의 건강 상태는 나빠지고 교육은 지연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여성의 경제적 자치권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37. 이것은 단지 여성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성의 기능 개발과 독립을 제한하고 고용 기회를 축소시키며 그로 인하여 그 여성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38. 일부 국가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혼인 적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규정은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지적 개발 속도를 가지고 있거나 혼인과 여성의 신체적, 지적 발전 정도가 무관하다고 하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여아의 약혼 혹은 가족 구성원이 대신하는 성혼이 허용된다. 그러한 행위들은 동 협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성의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에도 반한다.
39. 당사국은 또한 민사적으로 체결된 것이든 혹은 관습이나 종교법에 따른 것이든 간에 모든 혼인의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는 그를 통해서 동 협약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고 부부간 평등, 혼인 최소 연령, 중혼과 일부다처혼의 금지 및 아동의 권리 보호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권고

여성에 대한 폭력

40. 가족생활에서의 여성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본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제11차 회기)의 규정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당사국에게 공적 및 가족생활 모두에서,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해하는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일반권고를 준수하도록 촉구한다.

유보

41. 본 위원회는 제16조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유보를 하는, 특히 제2항을 유보하는 경우에, 당사국들을 경계하며 주목하여 왔는데, 그러한 당사국들은 상기 조항의 준수가 특히 문화적, 신앙적 신념 혹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기초하여 가족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와 충돌된다고 주장한다.
42. 이러한 국가들 중 다수는 부(父), 남편, 아들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근본주의자나 다른 극단주의자적 견해 혹은 경제적 궁핍이 구 가치관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조장해 온 일부 국가들에서, 가족 내 여성의 지위는 급격하게 실추되어 왔다. 현대 사회가 그 사회의 경제적 진보와 공동체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성인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온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금기들과 보수적 혹은 극단적인 견해들이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왔다.
43. 제2조, 3조 및 특히 24조와 일치하여,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가정에서의 여성 불평등 관념을 단호하게 제거함으로써, 각국이 특히 동 협약 제9조, 15조 및 16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44. 당사국은 법이나 종교적, 사적 법규 혹은 관습에 의해 형성된 양성 불평등의 어떠한 관념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하고, 특히 제16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최초 보고서와 후속 정기 보고서들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위원회는 유보와 일정 법률, 특히 가족을 다루는 법 없이 동 협약을 비준하거나 그에 가입한 일부

- 당사국이 실제로는 동 협약의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6. 그 국가들의 법은 규범, 관습,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초하여 여성에 대한 다수의 차별적 조치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이러한 조항들과 관련한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가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47. 본 위원회는, 특히 동 협약의 제1조와 2조에 기초하여, 그러한 당사국이 본 문제와 관련한 사실적 상황을 검토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국의 입법에 대하여 요청되는 조치들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

48. 본 일반권고의 논평을 참조하여, 보고서에서 당사국들은:
 - (a) 특히 제16조에 대한 유보 및 동 협약에 대한 모든 유보의 철회를 위한 자국의 진전 정도를 표시하여야 하고,
 - (b) 자국의 국내법이 제9조, 15조 및 16조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종교적, 사적 법규 혹은 관습을 이유로 법률과 동 협약의 준수가 지연되고 있는 분야들을 나타내야 한다.

입법

49. 당사국은 동 협약의 준수, 특히 제9조, 15조 및 16조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 협약의 준수에 대한 촉구

50. 본 일반권고의 논평들을 참조하고 제2조, 3조 및 24조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당사국, 특히 종교적, 사적 법규 혹은 관습이 이러한 원칙들과 충돌하는 국가들은 동 협약 상 원칙들의 충실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조치들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차 회기 (1995)*

일반권고 22: 동 협약 제20조의 개정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총회의 요구에 따라 동 협약 제20조 수정을 위하여 1995년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고,

제10차 회기에서 채택한 이전의 결정이, 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잔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동 협약이 가장 많은 수의 당사국들에 의해 비준된 국제 인권 협정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동 협약 조항들이 개인 일상의 모든 부분과 사회 모든 영역 및 국가에서 여성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부속서 I에 반영된 대로, 상정이 계류된 보고서의 잔무뿐만 아니라 비준 증가로 인한 본 위원회의 업무 부하를 우려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당사국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그로 인해 보고서를 갱신하기 위해 국가들이 추가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그 협약에 의해 한정된 회기를 가지는 유일한 인권

* 문서 A/50/38에 포함.

조약 기구이고, 부속서 II에 반영된 대로 모든 인권 조약 기구들 중 가장 단기의 회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동 협약에 규정된 회기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 동 협약에 따른 본 위원회의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하며,

1. 총회가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동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기간을 매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본 위원회의 회의 기간에 대한 동 협약 제20조의 개정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 또한 개정 과정의 완료가 계류 중인 동안, 총회는 본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1996년에는 두 차례의 회기를 개최하도록 하는데, 각각은 3주간의 회의 기간을 갖고 각 회기 전 실무 그룹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3. 나아가 당사국 회의는 기능 수행에 있어 본 위원회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4.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업무부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와 다른 인권 조약 기구들에 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제16차 회기 (1997)*

일반권고 23: 정치적 및 공적 생활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특히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a) 모든 선거와 국민 투표에서의 투표권과 공적인 선출 기구의 선거에 출마할 권리.
- (b) 정부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이행에 참여할 권리 및 모든 수준의 정부 활동에서 공직을 가지고 공적 기능을 수행할 권리.
- (c)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련된 비정부기구와 단체에 참여할 권리.

배경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국가의 공적 생활에 여성의 참여에 대하여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의 전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 속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2. 나아가 동 협약은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 문서 A/52/38에 포함.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3. 나아가 동 협약 제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4. 다른 협약, 선언 및 국제적 분석은 공적 생활에 대한 여성 참여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평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틀을 제시해 왔다. 이에는 세계인권선언¹,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²,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³, 비엔나 선언⁴, 베이징 선언 13항과 행동 강령⁵, 동 협약 하의 일반권고 5 및 8⁶,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논평 25⁷,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하여 유럽 연합 이사회가 채택한 권고⁸ 및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정책 결정에서 성적 균형을 이룩하는 법”⁹이 포함된다.
5. 제7조는 당사국에게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여성이 정치적 및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같은 평등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7조에 규정된 의무는 정치적 및 공적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하부조항 (a), (b) 및 (c)에 규정된 분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은 폭넓은 개념이다. 이는 정치권력, 특히 입법, 사법, 집행 및 행정 권력의 행사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국제적, 국내적, 광역적, 지역적 수준의 공공 행정 및 정책의 입안과 이행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또한 공의회, 지역 위원회 및 정당, 노동조합, 직종별·산업별 협회, 여성단체, 공동체 기구,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관련된 기타 기구와 같은 조직들을 포함하는 시민 사회의 여러 양상들을 포함한다.
6. 본 협약은 평등이 효과적이라면, 세계인권선언 제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5조와 같은 국제적 인권 협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이 보통 선거와 비밀 선거의 기초 위에 행해지는 정기 선거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것을 보장받는 정치 체제의 틀

안에서 이러한 평등이 달성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7. 공적 생활과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와 기회 평등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 협약이 강조함으로써 인하여 본 위원회는 동 협약 제7조를 검토하고 당사국들이 국내법과 정책을 재검토하며 동 협약에 기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당사국들은 이하의 논평과 권고들을 고려해야 한다.

논평

8. 인간 활동의 공적, 사적 영역은 항상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늘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사적 혹은 가정적 영역의 일을 부여받아 왔고,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은 하위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와 반대로 공적 생활은 존중받고 명예로운 것으로서 사적, 가정적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확장된다. 역사적으로 남성은 공적 생활을 지배하고 여성을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 종속시키는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9.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여성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들의 일상생활 방식과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생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특히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배제는 여성을 침묵시키고 여성의 기여와 경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10.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이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은 문화적인 가치관 구조와 신앙, 제도의 부재,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을 남성이 공유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모든 국가들에서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신념은 여성을 사적 영역의 활동에 한정시키고 공적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11. 여성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여성이 좀 더 공동체 생활에 참여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여성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없게 하고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가사 일과 경제적 의존이라는 이중 부담은, 공적 및 정치적 업무가 변동이 불가능한 장시간의 투입을 요구한다는 점과 함께 여성이 더욱 적극적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12. 매체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정형화는 정치에 있어서 여성을 환경, 아동, 보건 등과 같은 문제에 한정시키고 재정, 예산통제, 갈등해결에 대한 책임에서

여성을 배제시킨다. 정치인이 배출되는 직업군들에 대한 여성의 진출 부족은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 지도자가 정권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것이 여성 자신의 권리에서 도출된 선거 승리보다는 여성의 부(父), 남편 또는 남성 친족의 영향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정치 체제

13. 양성 평등 원칙은 대부분 국가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모든 국제적 문서들에서 확인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여성은 평등을 획득하지 못하였고 여성 차별은 공적, 정치적 생활에 대한 낮은 참여도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남성 단독으로 개발한 정책과 결정은 인간 경험과 잠재력의 일부분만을 반영한 것이다. 정당하고 효과적인 사회 조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포섭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14. 어떠한 정체 체제도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의 권리와 이익을 여성에게 부여하지 못하여 왔다.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참여 기회를 개선하여 왔지만, 여성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들이 여성의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볼 때,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과 이익을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통합하는데 실패해 왔다. 여성이 공적 생활과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사회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오직 정치적 정책 결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의해 공유되고 양성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때만이 진정하고도 역동적인 의미와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 공적 생활과 정책 결정에 대한 여성의 충분하고도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여성 권리의 이행과 동 협약의 준수가 증진되는 것을 보여준다.

잠정적 특별 조치

15. 법적인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의도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남성을 무심코 장려하는 구시대적인 관행과 절차들의 결과일 수 있다. 동 협약 제4조에 따라,

동 협약 제7조, 8조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사용을 장려한다. 평등한 참여를 이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잠정적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인력채용, 재정보조, 여성지원자 훈련, 선거절차 개정, 평등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개발, 법관 혹은 모든 사회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군과 같은 공적 지위에 대한 여성 채용 목표제, 할당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 장벽의 공식적인 제거와 공적인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장려하고자 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의 도입은 정치적 생활에서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는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 대한 남성의 수세기에 걸친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정당과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행하는 완전하고 실효적인 여성 참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 분야에 대한 격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가 평등 원칙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들을 준수하는데 확실히 기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개요

16. “베이징 행동 강령”⁵에서 강조되었던 중요한 문제는, 법적 상태와 사실적 상태 사이의 간극 혹은 일반적인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여성 참여의 현실에 대한 권리이다. 조사에 의하면, 만약 여성 참여가 30 내지 35%에 이르게 된다면(일반적으로 “임계 수치”라고 일컫는다), 정치 유형과 결정의 내용들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게 되고 정치적 생활이 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17. 공적 생활에서 폭넓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즉 국내적 및 국제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하여야만 여성이 평등, 발전, 평화 달성과 같은 목표에 대한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보장되려면 성의 관점이 결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기여하는 장점을 취하고 그들의 이익 보호를 보장하며 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인권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생활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여성에 대한 권력 부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투표권 및 피선거권 (제7조 (a))

18. 동 협약은 당사국이 헌법과 법률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다는 토대 위에서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상 또 사실상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
19.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국가들이 헌법적으로 혹은 다른 법률들을 통하여 모든 선거와 공적인 국민 투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이러한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a) 여성은 후보자, 정당의 정강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정보나 정부와 정당이 제공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낮은 접근성을 갖고 있다.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한 투표권을 실현하는 것을 저해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에는 여성의 문맹과 정치 체제에 대하여 혹은 정치적 주도권과 정책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참정권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 책임, 변화의 기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여성이 언제나 투표인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 (b) 재정적 제한과 더불어 여성이 지게 되는 노동의 이중고는 여성이 선거 운동에 관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완전한 자유를 가질 시간과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 (c)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 사회적, 문화적 고정관념은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많은 남성들은 설득이나 여성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포함한 직접적인 행위를 통하여 여성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통제한다. 그러한 관행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 (d) 일부 국가에서, 여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적 혹은 정치적 생활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다른 요소들에는 여성의 이주의 자유 또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 만연된 부정적 태도로 인한 참여권에 대한 제한, 유권자들의 여성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일부 여성들은 정치 진출에 관여하는 것을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운동에 대한 참여를 피한다.
21. 이러한 요인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전 유권자의 절반을 대표하는 여성이 그들의

- 정치권력을 주장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정권을 교체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정책을 제거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 모순을 설명한다.
22. 비밀선거, 의석분배, 선거구 선택 등의 체제는 모두 의회로 선출되는 여성의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당들은 기회 균등과 민주주의 원칙을 채택하여야 하고 남성과 여성 후보자의 수적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여성의 투표권 행사는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주는 제한이나 조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의 재산적 자격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여성에 대하여 불평등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동 협약의 규정들을 위반하게 된다.

정부 정책 입안에 참여할 권리 (제7조 6항)

24. 정책 형성 단계에서 정부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평등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25. 제7조 (b)는 또한 당사국이 여성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공적인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대표할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성적인 문제들을 주류화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공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균형적인 성의 관점을 제 공할 것이다.
26. 당사국은 그들이 통제하는 경우에 여성을 정책 결정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임명하고 당연히, 여성의 관점과 이익을 폭넓게 대변하는 집단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수용할 책임을 진다.
27.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정부 정책 입안에 대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밝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러한 장애요인에는 명목상 여성을 임명하고 갖는 자기만족과 여성 참여를 저해하는 전통적, 관습적 태도가 포함된다. 여성이 정부 내 관리자 지위에서 폭넓게 대표되지 않거나 여성이 부적절하게 혹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 정부 정책은 종합적이지도 실효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28.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내각과 행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

지만, 정당 역시 여성을 정당 명부에 등재시킬 것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여성을 후보 지명할 책임을 지고 있다. 당사국은 여성이 정부 자문 기구에 남성과 동등한 기반 하에 임명되도록 하고 이러한 기구들이 적절하게 여성을 대표하는 시각들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여론을 지도하고 이끌며 여성을 차별하거나 여성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를 저해하는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임이다.

29. 내각과 행정부의 고위직 및 정부 자문 기구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 당사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조치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잠재적 피지명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여성 후보자를 우선하는 규칙의 채택; 한 성(性)이 공공 기구 구성원의 40%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의 채택; 내각과 공직 임명에 있어 여성 할당제; 공공 기구와 공공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격 있는 여성 후보가 지명되도록 여성 단체와의 협의 및 공공 기구나 지위에 대한 임명 시 여성 후보 추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의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 사적 단체의 후보 추천에 따라 자문 기구의 구성원이 임명될 때, 당사국은 그런 단체가 자격 있고 적합한 여성을 자문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추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공직을 가질 권리 및 모든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제7조 (b))

30.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여성은 내각, 공무원직 및 공공 행정, 사법부와 사법 체제의 최고위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좀처럼 이러한 관리직 또는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하위 직급과 보통 가정 및 가족에 관련된 지위에 임명되는 여성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 정책 혹은 개발, 정치적 업무, 국방, 평화유지 임무, 분쟁 해결 혹은 헌법적 해석과 결정에 관련된 의사 결정 지위에 임명되는 여성은 극소수이다.
31.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왕권을 보유하고, 종교 혹은 국가를 대신하여 관할권을 부여받은 전통적인 재판소의 판사가 되거나 군대에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공동체 생활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술로부터 사회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동 협약의 원칙들에 위배된다.

비정부 기구와 공적, 정치적 기구에 참여할 권리 (제7조 (c))

32.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정당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 드문 경우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불충분하게 대표되고 영향력이 적은 역할 수행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당으로 하여금 정당 활동에 여성이 완전하고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당은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대표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 재정, 기타 재원의 제공을 포함한 실효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며, 여성이 정당 사무직에 종사하고 선거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도록 하는 평등한 기회를 사실상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33. 일부 정당이 채택한 조치들에는 여성을 위해 정당 집행기구의 일정 최소 의석이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 여성이 일관되게 불리한 선거구나 정당 명부상 가장 하위에 배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잠정적 특별 조치들이 특별히 반차별 입법이나 다른 헌법적 평등 기준 하에서 허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4. 노동조합 같은 다른 기구들과 정당은 정관, 그러한 규칙의 적용 및 그 집행 기구가 성별 균형을 이루어 대표되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기구가 여성이 사회 모든 부문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기여함을 통하여 이익을 얻도록 하고, 양성 평등에 대한 약속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런 기구들은 비정부 기구가 그러하듯이, 여성이 정치적 기술, 참여 및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귀중한 훈련의 장을 제공한다.

제8조 (국제적 수준)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자국의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35.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수준, 모든 영역의 국제적 사무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는 경제적, 군사적 사안, 다자 및 양자 외교,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대한 공식 대표단 파견이 포함된다.
36.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총체적으로 대다수 정부의 외교 및 대외 업무, 특히 최고위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국가의 대외관계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사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경우에 여성은 혼인 상태를 이유로 한 제한으로 인해 임명에서 차별받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남성 외교관의 배우자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동일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도 한다. 국제 업무에 여성이 발탁될 기회는, 여성이 부양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락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등, 여성의 가정적 책임에 대한 억측을 이유로 종종 거부되기도 한다.
37.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의 많은 상주 대표단에는 여성 외교관이 없고 관리자 직급에도 극소수의 여성만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 전 지구적 목표와 의제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문가 회의나 협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엔 기구와 지역적 수준의 다양한 경제, 정치, 군사 기구들은 중요한 국제적 고용주가 되었으나, 역시 여기에서도 여성은 하위 직급에 집중된 소수 집단으로 남아 있다.
38.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는 관련 직책 및 공적 대표단으로의 임명과 승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데서 기인한다.
39. 현대의 세계가 세계화됨에 따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진출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졌다. 모든 국제기구의 의제에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 인권을 통합시키는 것은 각 정부의 의무이다. 평화 유지, 분쟁 해결, 군비 축소 및 비핵화, 개발, 환경, 대외 원조, 경제 제재와 같은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한 많은 중대한 결정들이 한정된 여성의 참여 속에서 내려진다. 이는 비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확실히 대조적인 것이다.
40. 국제 협상, 평화 유지 활동, 예방 외교의 모든 차원, 중재, 인도적 원조, 사회적 화해, 평화 협상 및 국제 형사 사법 체제 등에 상당수의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변화

를 가져올 것이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기타 분쟁의 처리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과 분석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서로 다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¹⁰

권고

제7조 및 8조

41.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이 동 협약의 원칙들, 특히 제7조 및 8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적절한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정당과 노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동 협약 상 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을 아닐지라도 여성 차별을 하지 않고 제7조 및 8조상의 원칙들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3. 당사국은 제7조 및 8조가 다루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잠정적 특별 조치들을 도입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4. 당사국은 제7조 혹은 8조에 대한 어떠한 유보에 대하여도 그 이유와 효력을 설명하여야 하고, 그 유보가 반영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관습적 혹은 고정관념적인 태도들과 그러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이 행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유보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밀한 재검토를 하며 자국의 보고서에 그 유보의 철회를 위한 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45. 제7조 (a)에 따라 실효성을 위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감시해야 하는 조치들에는 다음에 기술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 (a) 공적인 선출직을 차지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균형을 확보.
 - (b) 여성이 자신의 투표권의 존재와 중요성 및 권리 실현 방법을 파악하고 있도록 보장.
 - (c) 문맹, 언어, 빈곤, 여성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장애를 포함하여, 평등에 대한 장애요인 극복을 보장.
 - (d)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경험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

46. 제7조 (b)에 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에는 다음 사항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포함된다.
- (a) 정부 정책 입안에 있어서 여성 대표성의 평등.
 - (b) 여성의 평등한 공무담임권의 실제적 향유.
 - (c) 여성에게 개방되고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채용과정.
47. 제7조 (c)에 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에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 조치들이 포함된다.
- (a) 여성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실효적 법률 제정을 보장.
 - (b) 비정부 기구와 공적 및 정치적 단체들이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독려.
48. 제7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제7조에 규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규정들을 기술할 것.
 - (b) 법적 규정 혹은 전통적, 종교적, 문화적 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들 권리에 대한 모든 제한들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
 - (c) 이들 권리 실현에 대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고 계획된 조치들을 기술할 것.
 - (d) 이들 권리를 행사하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 자료를 포함시킬 것.
 - (e)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책을 포함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정책 입안의 유형과 참여의 수준 및 정도를 기술할 것.
 - (f) 제7조 (c)에 기하여, 여성단체를 포함하여 자국 내 비정부 기구에 대한 여성 참여의 범위를 기술할 것.
 - (g) 당사국이 이들 기구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범위와 그들의 자문이 모든 수준의 정부 정책 입안과 이행에 있어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대하여 분석할 것.
 - (h) 정당,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및 직업 단체의 회원이나 직원으로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된 요인을 분석할 것.

제8조

49. 실효성을 위해 규정되고 시행되며 감시받아야 하는 조치들에는, 유엔 총회의 주요 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 전문 기구, 조약 기구를 비롯한 모든 유엔 기구 회원 자격과 독립적인 실무 그룹, 국가 보고관이나 특별 보고관으로의 임명에 있어서 더

나은 성 인지적 관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들이 포함된다.

50. 제8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a) 자국의 외교 업무나 통상적인 국제적 대표 혹은 국제회의의 정부 대표단에 포함되거나 평화 유지나 분쟁 해결 역할에 지명되는 등의 국가를 대표하는 업무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과 그 직위의 선임 여부를 보여주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를 제공할 것.
- (b) 공식 대표단 및 관련 직위에 대한 여성의 임명과 승진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술할 것.
- (c)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정보와 다자 포럼, 특히 여성 발전을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및 비정부 기구가 출판한 공식 문서를 널리 유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기술할 것.
- (d) 개인 자격으로든 여성단체나 혹은 다른 조직의 구성원 자격으로든,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여성 차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

주(註)

¹ 총회 결의 217 A (III).

² 총회 결의 2200 A (XX I), 부속서.

³ 총회 결의 640 (VII).

⁴ 세계인권회의 보고서, 비엔나, 14-25 6월 1993 (A/CONF.157/24(Part I)), 제III장.

⁵ 제4차 세계여성회의 보고서, 베이징, 4-15 9월 1995 (A/CONF. 177/20 및 Add.1), 제 I 장, 결의 1, 부속서 I.

⁶ 총회 공식 기록, 제43차 회기, 부록 No. 38 (A/43/38), 제 V 장.

⁷ CCPR/21/21/Rev.1/Add.7, 27 8월 1996.

⁸ 96/694/EC, 브뤼셀, 2 12월 1996.

⁹ 유럽 위원회 문서 V/1206/96-EN (3월 1996).

¹⁰ 1995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 강령 141항 참조 (A/CONF.177/20, 제 I 장, 결의1, 부속서II). 또한 134항의 부분 참조: “권력 구조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 및 분쟁 해결과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여성의 충분한 진출은 평화와 안전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제20차 회기 (1999)*1)

일반권고 24: 동 협약 제12조(여성과 보건)

1.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출산 보건을 포함한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권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상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제20차 회기에서 제21조에 따라 동 협약 제12조에 관한 일반권고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배경

2. 당사국의 동 협약 제12조 준수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의 핵심이다. 본 조는 당사국들이 여성이 일생에 걸쳐, 특히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 및 산후기간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협약 제18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여성 건강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있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반권고는, 당사국 및 여성 건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12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이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별을 제거하는 조치들을 다루고자 한다.
3. 최근 유엔 세계 회의는 이러한 목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일반권고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회는 유엔 세계 회의, 특히 1993년 세계인권회의와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 회의가 채택한 관련 행동 프로그램을 고려하였다. 본 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TO), 유엔인구기금(UNFPA) 및 다른 유엔 기구들의 업무에 또한 주목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번 일반권고를 준비함에 있어 여성 보건 분야의 특별 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왔다.

* 문서 A/54/38/Rev.1, 제 I 장에 포함.

4. 본 위원회는 다른 유엔 문서들이 보건권과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대한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한 문서에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있다.
5. 본 위원회는 또한 이전에 여성 할레, 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 장애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일반권고를 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동 협약 제12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6.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가 건강 상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남녀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건강 상태가 다양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그런 이유로, 이주 여성과 난민여성, 국내 피난민 여성, 소녀와 노인여성, 매춘 여성, 토착민 여성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여성과 같이 취약하고 불리한 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보건 상 필요와 권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 본 위원회는 여성 보건권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당사국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충분하며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식량 공급을 통하여 일생동안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킬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임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특히 시골 여성을 위하여 생산 자원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권 내의 모든 여성의 특별한 영양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12조

8.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일생에 걸친 여성의 건강 문제를 다루도록 권유받는다. 따라서 이 일반권고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는 소녀와 성인이 모두 포함된다. 이 일반권고는 본 위원회의 제12조의 핵심 요소에 대한 분석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요소

제12조 1항

9. 당사국은 자국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보건 문제에 대하여 보고할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가 보건 분야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질병의 발생과 심각성, 여성 건강과 영양 상태를 해치는 환경, 예방적, 치료적 조치들의 유효성과 비용적 실효성에 관하여 성별로 분류된 신뢰할 만한 자료와 함께, 아울러 여성을 위한 보건 입법, 계획 및 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보건 입법, 계획 및 정책이 과학적이고도 윤리적인 조사와 자국 여성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고, 모든 인종, 지역 혹은 공동체 간의 편차나 종교, 전통, 문화에 기초한 관행들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논증해야 한다.
10.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나 특정 여성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질병, 보건 환경, 건강에 해를 미치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개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11. 만약 어떤 보건 의료 체제에서 여성에 대한 특수 질병을 예방, 발견, 치료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국이 여성을 위한 특정 출산 보건 서비스의 실행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심적 반대에 기초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한다면, 여성을 다른 보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개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12. 당사국은 보건 의료에 관한 정책과 조치들이 여성의 필요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보건권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남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을 구별하는 특징적 양상과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국이 파악한 바를 보고하여야 한다.

- (a)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구별하는 여성의 생리 주기, 여성의 출산 기능 및 폐경기와 같은 생물학적인 요소들. 또 다른 예로서 여성이 직면한 성병에 대한 더 높은 노출 위험.
 - (b) 여성 일반에게 특히, 일부 여성 집단에게 달라지는 사회·경제적 요소들. 예를 들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여성의 영양과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은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여아와 청소년기 소녀는 자신들을 신체적, 심리적 위협의 위험과 원치 않는 임신, 조기 임신의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의 연장자인 남성과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적 학대에 취약하다. 여성 생식기 절단과 같이 일부 문화적 혹은 전통적 관행들은 사망, 불구와 같이 고도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다.
 - (c)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적 요소들은 일반적으로는 우울증, 특별한 경우 산후 우울증과 여타 거식증 및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
 - (d) 환자의 비밀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나, 그것은 여성이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하여 여성의 보건, 복지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여성은 생식계 관련 질병, 피임 혹은 불완전한 낙태 및 성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된다.
13. 양성 평등의 토대 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제공 및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는 보건 의료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를 함축한다. 당사국은 입법, 집행 행위 및 정책이 상기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진다. 당사국은 또한 효과적인 사법 조치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의 위반이 된다.
14.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여성의 보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성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국은 어떻게 공적, 사적 보건 의료 제공자들이 여성이 보건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존중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여성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여성이 미혼¹⁾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 파

트너,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적절한 보건 의료를 이용하는데 다른 장애요인들에는 오직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 행위를 범죄화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들이 포함된다.

15. 여성 건강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기관과 공무원들이 사적 개인이나 조직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에 근거한 폭력이 여성 건강에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a) 여성에 대한 폭력,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를 다루는 보건-의료 의정서와 병원의 절차 및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과 그것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정책 입안.
- (b)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성 인지성 훈련(gender-sensitive training).
- (c)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여성 환자에 대해 성적 학대를 범한 경우 고발을 심리하고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공정하고 보호적인 절차.
- (d) 여성 생식기 절단과 여아의 조혼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과 효과적인 이행.

16. 당사국은 무력 충돌 상황에 처한 여성, 난민 여성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을 위하여 정신적 외상 치료, 상담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와 보건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17. 권리 이행의 의무는 당사국에게 여성이 자신의 보건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용한 자원의 범위까지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예산적, 경제적 및 기타 다른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높은 산모 사망률과 전 세계적 발병률, 산아 제한 대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가족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부부의 증가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여성에게 보건 혜택의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제공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결핵, HIV/AIDS와 같은, 특히 예방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여성 질병의 중대성을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보건 업무를 사적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1) 총회 공식 기록, 제49차 회기, 부록 No. 38 (A/49/38), 제 I 장, 일반권고 21, 29항 참조.

이전하여 상기 의무를 포기한다는 증거들에 대하여 우려한다. 당사국은 사적 기관으로의 권한 위임 혹은 이전을 통하여 자신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당사국은 공적 권한이 여성 보건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절차와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당사국은 제3자에 의한 여성 권리 침해를 억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와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8. HIV/AIDS 및 기타 성병에 관한 문제들은 여성과 청소년기 소녀의 성 보건에 대한 권리의 핵심이다. 많은 국가의 청소년기 소녀와 여성은 성 보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에 근거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결과로서, 여성과 청소년기 소녀는 종종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성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여성 성기 훼손, 일부다처제, 부부 강간과 같은 해로운 전통 관습은 소녀와 여성들을 HIV/AIDS 접촉 위험 및 다른 성병에 노출시킨다. 특히 매춘여성은 이러한 질병에 취약하다. 당사국은 편견과 차별 없이, 인신매매된 여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들이 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 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남녀 청소년들이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를 보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에서 적절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로부터 성 보건 및 출산 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9.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제12조의 준수를 위하여, 여성이 양성 평등 원칙의 토대 위에서 보건 의료를 이용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조사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동 협약 제1조의 규정들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남성과 비교하여 보건 정책, 절차, 법률 및 의정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평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여성은 적절하게 훈련받은 사람들로부터 제안된 절차와 이용 가능한 대안책의 예상 이익과 잠재적 악영향을 포함하는 어떠한 치료나 연구에 동의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21. 당사국은 여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들과 여성이 상기 서비스를 적시에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비용과 배우자, 부모 혹은 보건 당국의 사전 허가 요구, 보건 의료 시설까지의 원거리 및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의 부재와 같이 여성의 이용을 해하는 여건과 상황들이 포함된다.

22. 당사국은 예를 들어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라 함은 어떤 여성이 완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하고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비밀유지를 보장받아 자신의 필요와 관점에 민감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부동의 피임이나 의무적인 성병 검사 혹은 고용 조건으로서의 의무적인 임신 검사와 같이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존엄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인 형태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당사국은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는 가족계획, 일반적으로는 성 보건 및 출산 보건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의 적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가족계획에 관련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 보건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²⁾
24. 본 위원회는 노인 여성을 위한 보건 서비스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은 대개 남성에 비해 수명이 길고 남성보다 더 많이 골다공증, 치매와 같은 장애나 퇴행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은 대체적으로 연로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고령과 관련된 불리한 조건이나 장애를 다루는 보건 서비스를 노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 장애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은 특히, 성 차별, 폭력, 빈곤, 무력 충돌, 혼란 및 기타 형태의 사회적 박탈의 결과로서 여성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정신적 건강의 위험 요소가 광범위하다는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편 당사국은 보건 서비스가 장애 여성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보건 교육은 특히, 양성 평등, 폭력, 성병 예방, 출산 및 성 보건 권리까지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2항

26. 보고서에는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간에 관해 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특수하게는 취약 집단, 지역 및 공동체 내에서 상기 조치들이 감소시킨 사망률과 발병률에 대한 정보도 실어야 한다.
27.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필요한 경우, 그들이 어떻게 여성을 위해 안전한 임신, 출산 및 산후수유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수유기 서비스를 이용할 돈이 부족하여 임신과 관련된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안전한 모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응급 산부인과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임을 지적하는 바이며, 당사국은 이런 서비스들이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 내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 협약의 기타 관련 조항들

28. 제12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당사국은 여성 보건과 관련된 동 협약 상 다른 조항들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들에는, 당사국이 가정교육에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포함시키는 것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제5조 (b), 당사국이 동등한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여성들이 보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미성년 임신의 결과에 기인한 여학생의 학업중퇴 비율을 줄이도록 규정한 제10조, 당사국이 여성 및 소녀들에게 가족계획 관련 정보와 조언을 비롯한 가족 보건 및 복지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교육적 정보의 이용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제10조 (h), 출산 보호 조항, 임신 중 위험한 작업으로부터의 특별한 보호조치 및 유급 출산 휴가 제공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여성 보건의 보호와 근무환경에서의 안전에 관련된 제11조, 당사국이 시골 여성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보건 시설의 이용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제14조 2항 (b), 당사국에게 적절한 질병 예방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특히 요구되는 주거, 공중위생 시설, 전력 및 용수, 운송 및 통신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h), 당사국이 여성에게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

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수단을 향유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제16조 1항 (e) 등이 포함된다. 제16조 2항은 조기 출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아동의 약혼 및 결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행동에 대한 권고

29. 당사국은 여성 보건을 전 생애 동안 증진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전략에는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질병과 상황의 예방 및 치료, 여성에 대한 폭력에의 대응 등을 위한 개입을 비롯하여, 지불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30. 당사국은 남성 보건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상이한 건강 상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여성 보건 분야가 보건예산 전체에서 일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과 인적, 행정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31. 또한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여성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핵심에 성 인지적 관점을 두고,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 감시 및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
 - (b) 성 보건 및 출산 보건을 비롯한 여성 보건 서비스, 교육 및 정보제공 이용에 대한 모든 장애요인의 제거 및 HIV/AIDS를 비롯한 성병의 예방, 치료에 대하여 청소년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에 자원을 할당하도록 할 것.
 - (c) 가족계획과 성교육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안전한 모성 서비스와 산전 지원을 통하여 산모 사망률을 감소시킬 것. 가능하다면, 낙태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조치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낙태를 범죄화한 입법을 개정할 것.
 - (d) 동등한 서비스 접근권과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 비정부적, 사적 기구들에 의한 여성 보건 서비스 제공을 감시할 것.
 - (e) 모든 보건 서비스가 자치권, 프라이버시권, 비밀유지권 및 정보에 기반한 동의와 선택권을 포함한 여성 인권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것.
 - (f) 보건 업무 종사자들의 훈련 교육 과정에 여성 보건과 인권, 특히 성에 근거한 폭력에 관련된 포괄적, 필수적, 성 인지적인 강의가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

제30차 회기 (2004)

일반권고 25: 동 협약 제4조 1항 (잠정적 특별 조치)

I. 도입

1.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제20차 회기(1999)에서 동 협약 제21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제4조 1항에 관한 일반권고를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새 일반권고는 특히, 일반권고 5 (제7차 회기, 1988),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8 (제6차 회기, 1988), 동 협약 제8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권고 23 (제16차 회기, 1997), 동 협약의 당사국 보고서와 그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 논평 및 여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일반권고에 기초하였다.
2. 이 일반권고에서, 본 위원회는 동 협약의 이행에서 당사국의 완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 1항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일반권고를 국내적, 지역적 언어로 번역하고 행정 조직을 포괄하는 정부의 입법, 집행, 사법 기구들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및 인권, 여성 단체와 기구들을 포함한 시민 사회에 널리 보급할 것을 장려한다.

II. 배경: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

3. 동 협약은 역동적인 장치이다. 1979년 동 협약이 채택된 이래, 본 위원회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다른 행위자들과 더불어, 진보적 사고를 통하여 동 협약 조항들의 실질적 내용과 여성 차별의 특별한 성질 및 그러한 차별에 맞서는 장치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해 왔다.
4. 제4조 1항의 범위와 의미는,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함에 있어서 법적, 사실적 평등권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전체적 대상과 목적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여성의 평등권을 존중,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행하고, 남성과 비교하여 사실적, 법적 평등을 획득한 지위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의 발전과 진전

을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5. 동 협약은 많은 국내적, 국제적 법적 기준과 규범들에서 사용되는 차별 개념을 초월한다. 그러한 기준과 규범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의적이고 불공정한 혹은/그리고 부당한 구별에 의한 처우로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동 협약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로부터 고통 받아왔고 계속 고통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6. 동 협약의 모든 실질적 조항들을 해석하는 일반적 체계를 구성하는, 제1항에서 5항 및 24항을 함께 살펴보면, 당사국이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는 세 가지 의무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단지 형식적인 법적 의무를 초월하여, 통합적인 방식과 정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7. 첫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상 직, 간접적¹ 여성 차별이 없도록 하고,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관할 소와 제재 조치 및 다른 구제책들을 통하여 공권력, 사법부, 조직, 기업 혹은 사적 개인이 자행하는 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둘째, 당사국은 구체적인 효과적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사실상의 지위를 개선할 의무를 진다. 셋째, 당사국은 개인에 의한 행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 및 사법적,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성별 간 관계² 및 성에 근거한 고정관념의 고착에 관하여 다루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
8. 본 위원회의 견해로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적 혹은 프로그램적 접근은 본 위원회가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는 여성의 사실적 평등을 성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동 협약은 여성에게 동일한 기반을 제공하고 결과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생물학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남성과 여성 간에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환경 하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다루기 위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지 않은 처우가 요구된다. 실질적 평등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충분한 대표성 극복 및 양성 간 자원과 권력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

9. 결과의 평등은 사실상 혹은 실질적인 평등의 논리적 귀결이다. 이러한 결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양적 혹은/및 질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 동등한 소득 수준을 누리는 것, 정책 결정과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 평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10.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 지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삶은 문맥적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조치들은 실질적인 기회, 제도, 체제의 변형을 위해 채택되어, 그들이 더 이상 역사적으로 결정된 권력과 생활 방식에 대한 남성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여성의 불변의 필요와 경험은, 개인 행위자나 지배적인 성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 문화적 구조와 제도에서의 차별에 의하여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여성 차별로부터 기인하는 다른 필요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짐에 따라, 여성의 필요는 변화되거나 소멸하고 혹은 여성과 남성 공통의 필요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실상 혹은 실질적인 여성 평등의 획득을 도모하는 법과 프로그램 및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동일하지 않는 처우의 영구화를 피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12. 특정 집단의 여성은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차별의 고통과 더불어 인종, 종족 혹은 종교적 정체성, 장애, 나이, 계급, 카스트 제도 및 기타 다른 요인들과 같이 부가적인 근거에 기하여 겪게 되는 다중적 차별로부터도 고통 받게 될 수 있다. 당사국은 그러한 다중적 여성 차별과 복합적인 악영향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수한 잠정적 특별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
1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더불어 유엔 체제가 채택한 다른 국제 인권 문서 및 정책 문서들은 평등 달성을 지원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그 조치들에 대한 의미와 해석도 역시 다양하다. 본 위원회는 제4조 1항에 관한 이 일반권고가 용어의 명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³
14. 동 협약은 과거와 현재에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향유를 저해한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별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은 사실상 혹은 실질적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동 협약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은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규범의 예외라기보다는,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들 중 하나이다.

III.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의미와 범위

제4조 1항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 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제4조 2항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A. 제4조 1항과 2항 사이의 관계

15. 제4조 1항에 따른 “특별 조치”와 제2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목적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4조 1항의 목적은 여성이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과거 및 현재의 여성 차별의 형태 및 효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여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잠정적인 특징을 갖는다.
16. 제4조 2항은 생물학적인 차이를 이유로 양성에 대하여 상이한 처우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11조 3항에 규정된 과학 기술적 지식으로 재검토될 때가 오기까지는 적어도 영구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B. 용어

17. 동 협약의 준비 의사록(travaux préparatoires)에서는 제4조 1항에 규정된 “잠정적 특별 조치”를 기술하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동 위원회 스스로 이전의 일반권

고들에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당사국은 종종 “적극적 행위”, “긍정적 행위”, “적극적 조치”, “역차별” 및 “적극적 차별”과 같은 용어와 시정적, 보상적 및 촉진적 의미에서 “특별 조치”를 동일시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양한 국가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논쟁 및 상이한 실행으로부터 도출된다.³⁾ 이 일반권고에서, 그리고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에서 나타난 관행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잠정적 특별 조치”라는 용어만을 유일하게 사용한다.

C. 제4조 1항의 핵심 요소

18. 제4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적 혹은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비차별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보기 보다는, 오히려 잠정적 특별 조치라는 것은 여성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사국의 필수 전략의 일부라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이 종종 과거의 여성 차별의 영향을 개선하기는 하나,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한 지위로 향상시켜야 하는 동 협약 하의 당사국의 의무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어떠한 증거와도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동 협약 하의 조치들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당사국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19. 당사국은 제4조 1항에 기해 여성의 사실상 및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핵심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잠정적 특별 조치와 여성과 여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된 다른 일반 사회 정책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여성에게 잠재적으로 우호적이거나 혹은 장래에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잠정적 특별 조치인 것은 아니다. 여성의 삶의 존엄성과 비차별을 확보하도록 고안된 여성과 여아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 조건 규정은 잠정적 특별 조치라고 명명할 수 없다.
20. 제4조 1항은, 그러한 특별 조치들의 “잠정적인” 성질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잠정적인”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장기간 그러한 조치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히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잠정적 특별 조치의 지속 기간은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응한 기능적 효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미리 정해진 경과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잠정적 특별 조

치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일정기간 유지된 경우, 중지되어야 한다.

21. “특별”이라는 용어는 인권 논의에 부합하지만, 역시 주의 깊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용어의 사용은 차별받는 여성과 다른 집단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사회에 대한 참여와 경쟁을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제4조 1항 입안 시 “특별”의 진짜 의미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조치라는 것이었다.
22. “조치”라는 용어는 자원의 분배 및/혹은 재분배; 우대; 목표채용, 고용, 승진; 시간과 관련한 숫적 목표; 할당제 등, 입법, 행정, 집행 및 다른 제 수단, 프로그램의 지원 혹은 도달과 같은 정책과 관행 등 광범위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한 “조치”의 선택은 제4조 1항이 적용되는 맥락과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달려 있다.
23.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과 이행은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의 자격 및 실력에 대한 논의와 정치, 교육, 고용과 같은 분야에서 남성보다 자격이 미비한 여성을 우선하는데 반발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잠정적 특별 조치가 사실상 및 실질적 평등의 확보하려 하므로 자격과 실력의 문제, 특히 공적, 사적 분야에서 규범적,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는 성적 편견에 관해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적 및 정치적 직무에 대한 임명, 선정, 선거에는 자격과 실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정함과 선거 선택을 포함하는 기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
24. 제1조, 2조, 3조, 5조 및 24조와 함께 이해하면, 제4조 1항은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6조 내지 16조와 연관 지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회는 만약 그러한 조치들이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전반적으로 달성 혹은 특별한 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하다면, 당사국은 상기 다른 조항과 연계 하여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생각한다.

IV. 당사국에 대한 권고

25.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 동 협약 제4조 1항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 혹은 그 결여에 관한 정보를 실어야 하고, 당사국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잠정적 특별 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6. 당사국은 여성의 사실상 및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촉진할 목적을 가진 잠정적 특별 조치와, 여성과 여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택되고 이행되는 기타 다른 일반 사회 정책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잠재적으로 혹은 앞으로 여성을 이롭게 할 모든 조치가 잠정적 특별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7. 당사국은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특별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한 목표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의 배경을 분석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국내적 배경에서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8. 당사국은 다른 조치보다는 특정 유형의 조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데는, 여성의 생활과 기회를 형성하는 조건과 영향을 비롯하여 여성 및 다중적 차별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특정 집단의 여성들의 실제 생활 상황에 대한 기술, 당사국은 특정한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누구의 지위를 개선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조치들과 여성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반적 조치 및 노력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9.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데 실패한 경우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실패는 무력함을 선언하거나 혹은 사적 영역, 조직 또는 정당과 같은 지배적인 시장이나 정치세력의 태만을 설명함으로써 간단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당사국은 모든 다른 조항과 연계하여 불 필요가 있는 동 협약 제2조가 상기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30. 당사국은 몇몇 조항에 따른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들의 법적 혹은 기타 근거 및 특정한 접근법을 선택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된다. 나아가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와 관련된 모든 입법에 대한 세부사항들, 특히 그러한 입법이 잠정적 특별 조치의 강제적 혹은 자발적 성격에 대한 규정을 두는지의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31.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이나 국내 법률에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포괄적인 반차별 법안, 평등기회 법안 혹은 여성평등에 관한 행정명령 등의 같은 입법이 주어진 분야에서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한 지침은 또한 고용 혹은 교육에 관한 특별한 입법에도 포함될 수 있다. 반차별 및 잠정적 특별 조치에 관한 관련 입법은 사적 조직 혹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측 행위자들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32. 본 위원회는 잠정적 특별 조치가 전국적, 지역적 혹은 지방 행정기관이 공적 고용과 교육의 분야에 대하여 입안하고 채택한 명령, 정책 지침/혹은 행정 지도에 기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당사국의 주의를 요청한다. 그러한 잠정적 특별 조치는 시민 서비스, 정치 역역 및 사교육과 고용의 분야도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잠정적 특별 조치가 공적 또는 사적 고용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와 협상될 수 있으며 또 공적·사적 기업, 단체, 기구, 정당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국의 주의를 요청한다.
33. 본 위원회는 잠정적 특별 조치를 위한 행동 계획이, 특정한 국내적 맥락 안에서 그리고 극복하고자 하는 사안들의 특징적 배경에 대응하여 구상, 적용,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차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 분야에서 여성에게 접근성을 만들어 주고 과소 대표성을 극복하며 특정 영역에서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하고 /또는 과거와 현재의 차별을 극복하고 사실상 평등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도록 고안된 행동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국의 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보고서는 또한 그러한 행동 계획이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역효과를 고려하는지 및 그에 대항한 여성 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보고서에서 잠정적 특별 조치의 결과를 기술하고 그러한 조치를 실패하도록 했다고 생각되는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
34. 제3조에 따라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를 구상, 이행, 감시, 평가 및 집행할 책임을 진 기구(들)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임은 여성부, 각 부처나 대통령실의 여성부서(presidential offices), 움부즈맨, 법원 혹은 특별 프로그램을 구상, 감시, 이행하고 그 영향과 결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위임을 받은 기타 다른

공적, 사적 실체 등 기존의 혹은 계획된 국가 기구에 부여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일반적으로는 여성, 특수하게는 영향을 받는 여성 집단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구상, 이행 및 평가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다양한 여성 집단을 대표하는 시민 사회와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및 협의도 특별히 권고하는 바이다.

35. 본 위원회는 여성 지위에 대한 통계 자료에 관한 일반권고 9에 주목하고 이를 반복하며, 당사국에게 여성의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의 향상 달성도와 잠정적 특별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로 분류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36. 당사국은 동 협약의 관련 조항(들)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 취해진 잠정적 특별 조치의 유형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각각의 관련 조항에 대한 보고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일정, 특정한 조치 선택의 이유, 그러한 조치들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이행과 발전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기구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특정 조치들의 영향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이 잠정적 특별 조치로 인하여 특정 분야에 접근하고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수의 여성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과 권력이 재분배될 것인지와 그것이 어떠한 일정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한다.
37. 본 위원회는 일반권고 5, 8 및 23에서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 분야와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이 자국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 사무에 참여하는 영역, 그리고 정치적 및 공적 생활 분야에 대한 잠정적 특별 조치 적용을 권고한 것을 반복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적 배경에서, 공적 및 정치적 생활에서의 모든 차원과 수준의 훈련, 고용 및 대표성과 더불어 교육의 차원에서 관련된 상기의 시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경우에서, 그러나 특히 보건 분야에서, 당사국이 영구적으로 진행 중인 조치들과 잠정적으로 진행 중인 조치들을 신중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38. 당사국은 잠정적 특별 조치가 여성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문화적 관행, 고정적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경 및 근절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잠정적 특별 조치는 또한 신용과 대출, 스포츠, 문화 및 오락, 법적 인식의 분야에서도 이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들은 시골 여성을

포함하여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9.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이 동 협약의 모든 조항 하에서 가능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한편, 평등한 참여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촉진과 일정 상황 하에서 그러한 조치가 절실하고 가장 적절한 경우에는 잠정적 특별 조치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주(註)

¹ 간접적인 여성 차별은 법, 정책 및 프로그램이, 실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여성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 중립적인 기준에 기초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성 중립적인 법, 정책 및 프로그램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과거 차별의 결과를 영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들은 남성적 생활방식을 모델로 삼고 따라서 남성과는 상이한 여성의 생활 경험적 요소들을 반영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토대로 하여 여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정 관념적인 기대와 사고방식 및 행동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또한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² “성(gender)은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에 부여된 사회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그것은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구조이지만, 역시 세속적인 관행의 영역에서 재생산된다. 또 이는 그러한 관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성은 자원, 부, 직무, 정책 결정 및 정치적 권력, 그리고 권리 행사와 공적 생활과 가족생활 내에서의 위치의 분배에도 영향을 준다. 문화와 시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적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불균형은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은 사회적 계급이고, 이런 의미에서 인종, 계층, 민족, 성적 취향, 나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성은 우리가 성적 정체성의 사회 구조와 양성 간 관계의 바탕이 되는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1999년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엔, 뉴욕, 1999, p 9.

³ 예를 들어, 잠정적 특별 조치를 명령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참조.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같은 조약 감시 기구의 관행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구들이 잠정적 특별 조치의 적용을 조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원조 하에 채택된 협약들과 “유엔 교육, 과학 및 문화 기구”의 여러 문서들 역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상징하고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을 보고할 특별 보고자를 임명하였다. 여성

지위에 관한 위원회는 1992년 잠정적 특별 조치의 이용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 강령을 비롯하여 세계여성회의에서 유엔이 채택한 문서들과 이후 2000년 후속조치를 검토해 보면, 사실상 평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사용하는 잠정적 특별 조치는, 사무국에서의 여성의 채용, 승진, 전근에 대한 행정적 지침을 포함한 여성 고용 분야의 실제적인 예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수준에서 50/50의 성비율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히 상위 직급에서 더욱 그러하다.

- ⁴ “적극적 행위”라는 용어는 미국과 다수의 유엔 문서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긍정적 행위”는 현재 유엔 문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행위”라는 용어는 국제인권법에서는 아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국가 행위”(국가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 대응하여 주도적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나타낸다. 따라서 “긍정적 행위”라는 용어는 동 협약 제4조 1항에서 이해되고 있는 잠정적 특별 조치를 나타내는 의미로서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역차별” 혹은 “적극적 차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많은 논평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39차 회의
2007년 7월 23일 ~ 8월 10일

비공식 번역임

1. 위원회는 2007년 7월 31일, 제 801회 및 802회 회의에서(CEDAW/C/SR.801 (B) 와 802 (B)), 대한민국의 제 5차 및 6차 정기보고서(CEDAW/C/KOR/5 와 CEDAW/C/KOR/6)를 심의하였음.

위원회의 현안 및 질의 목록은 CEDAW/C/KOR/Q/6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답변은 CEDAW/C/KOR/Q/6/Add.1에 수록됨.

서론

2.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제5차 및 6차 정기보고서를 준비한 대한민국 정부에 위원회는 감사를 표함. 위원회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동시에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를 고려한 보고서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함.
위원회는 또한, 심의 전 사전 실무그룹에서 제기한 현안과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대표단의 구두발표 및 위원회의 현장 질의에 대표단이 명확한 답변을 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표함.
3.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 전문가를 포함한 고위급 정부대표단의 파견을 평가함. 위원회 위원들과 대한민국 정부대표단과의 건설적 대화에 감사를 표함.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1999년 8월에 협약 제9조의 유보조항을 철회한 것을 평가함.
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10월 18일 모든형태의여성에대한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에 가입한 것을 환영함.

긍정적 측면

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1998년 제4차 정기보고서(CEDAW/C/KOR/4) 심의 이후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 양성평등의 촉진, 그리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법과 법규를 제·개정한 것을 높게 평가함.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차별제도인 호주제가 민법개정을 통해 폐지됨을 환영함.
7.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전폭적인 예산 확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그리고 정부부처 내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조직을 강화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함.
8. 위원회는 성인지적 관점을 모든 정부정책에 도입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2006년 성인지적 예산정책 도입을 평가함.
9.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1년 성을 포함한 18가지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기능을 지닌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축하함.

우려 및 권고사항

10.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협약의 모든 규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을 상기하는 한편, 현 최종권고문에 수록된 우려와 권고사항은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시까지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원회가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기한 분야에서의 이행에 중점을 둘 것과, 다음 정기보고서에 그 이행 사항과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

을 요청하며, 아울러 이행 확보를 위하여 동 권고사항을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를 요청함.

11.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5년 민법을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됨으로써 나머지 유보조항의 철회가 가능하게 된 것을 환영하지만, 협약 제16조 (g)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함.
1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구체적인 기간 내에 협약 제16조 (g)항 유보의 신속한 철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13. 대한민국의 국내법상 협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고 여성의 법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체계가 구비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 참여 및 고용 분야를 포함하여 협약의 모든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진전 속도가 더딘 점에 우려를 표함. 위원회는 또한 1984년 협약의 비준 이후로 협약을 인용한 소송사례가 부재한 것을 우려함. 이는 협약, 선택의정서,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적 권고가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여성 자신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함.
1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기존 법과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를 요청함. 이를 위해 단기, 장기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시한을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얼마나 실현했는지 그 효과, 경향, 진전 정도 및 성취 결과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필요시 목표 조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램. 위원회는 또한 국제 절차 및 그 활용도를 강화하는 등, 현존하는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를 권고함. 또한 변호사, 검사와 판사들을 대상으로 협약과 선택의정서 절차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기를 요청함.
15.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을 규정한다는 것,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에 기반한 여러 차별적 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직접적 및 간접적 차별과 협약 전체를 포괄하는 협약 제1조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가, 관련 국내법에서 차별에 대한 금지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함.

1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조 및 협약 전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 금지를 헌법 및 적절한 입법조치를 통해 구현하기를 요청하며 또한 민간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본질에 관련하여, 그리고 협약 제2조 (a)항의 남녀평등원칙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협약의 실질적 평등의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더 기울이길 요청함.
17. 위원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배우자 강간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기소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우려함. 또한 위원회는 여성 폭력에 대한 신고율, 기소율, 유죄 판결율이 낮은데 대해 우려를 표함. 만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의 부족에 대해 우려함.
1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여성폭력을 여성인권 침해로 인정하고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일반권고 19호를 충분히 활용하길 바램.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하고 성폭력 범죄에서의 피해자 신고 요건 폐지를 요청함. 위원회는 농촌여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이, 보호 명령 등 구제수단과 보호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충분한 숫자의 안전한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함.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 특히 법집행관, 법관,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을 이해하고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함.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의 정도와 그 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촉구하며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목표가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또한 통계자료와 조치의 결과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함.
19. 위원회는 계속되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현상 및 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강제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구출, 보호 및 재활 제도의 이행을 환영하나, 성구매 고객은 초범의 경우 교육을 위한 “존스쿨” 프로그램에 참

석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 반면, 소위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법률상 기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위원회는 우려를 표함. 또한 십대 소녀들이 돈을 목적으로 나이 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원조교제가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함.

2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 및 국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과 인신매매범들과 성매매 착취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함으로써 협약 제 6조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생국, 경유국, 목적국과 협조하여 국제적, 지역적, 양자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를 요청함. 위원회는 유엔 초국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에 비준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성매매 여성들이 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도록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대한민국에 요청함. 위원회는 성매매 여성들의 원활한 사회 재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여성과 여아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십대 소녀들의 원조교제 방지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도록 권고함.
21. 국제결혼 브로커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의 초안이 마련된 것을 알고 있지만, 위원회는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과 착취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될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의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함. 또한 이러한 국제결혼에 가정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함.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신속히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국제결혼 브로커, 인신매매자, 그리고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 정책들과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고 구제기간 중에는 국내체류를 허락하도록 권고함. 더불어 외국인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예방대책을 포함, 자신들의 권리와 구제 방법에 대해 알리도록 권고함.
23. 정당법과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등 정치와 공공분야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채택한 법과 계획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 특히 국회, 행정부, 사법부, 재외공관, 학계, 민간부문의 정책결정과정 직위에 여성들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에 대해 우려를 표함.

24.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분야를 포함한 모든 공공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약 제4조 1항과 위원회 일반권고 25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더 많은 한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함.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 여성리더들을 위해 제공 중인 리더십과 협상능력 훈련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도록 권고함.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들을 지속하도록 권고함.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행한 방안들의 효과와 시행 결과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차기 보고서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25. 위원회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가부장적인 태도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지속되고 있음에,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러한 우려를 표함. 이는 여성들의 교육과 직업 선택, 한정된 공공 및 정치 참여,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상황 등으로 반영되고 있음. 위원회는 이러한 고정관념이 여성폭력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또한 우려함.
26. 위원회는 잔존하는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실행하기를 요청함. 이러한 방안은 협약 제2조 (f)항과 제5조 (a)항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연관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교육 캠페인을, 특히 남성과 남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여야 함. 위원회는 상기 방안의 이행에 있어서 특별히 농촌지역을 목표로 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평가하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남아와 여아의 교육선택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더욱 촉진하도록 요청함. 또한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차별을 영속시키는 고정관념,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여성의 열등한 지위에 대처하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미디어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공적 또는 사적 분야에서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보도하도록 장려하기를 권고함.
27.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고용확대방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한 방안들을 환영하면서도, 위원회는 여성들이 당면해있는 심각한 불리한 처지, 즉 일정 저임금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 아웃소싱과 외부 계약과 같은 여러 형태의 탄력적 고용형태 및 이에 연관된 고용보장 및

부가급여의 부족, 그리고 남녀의 현격한 임금 차이에 대해 우려를 표함. 위원회는 또한 현존 노동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법을 교묘하게 회피하여 여성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부인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우려함. 특히,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여성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소 절차가 결여되었음을 우려함. 또한 여성들이 작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을 찾는 데에 주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함.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속화하도록 촉구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4조 1항과 위원회의 일반권고 25호에 의거 한시적 특별 조치를 도입하도록 요청함. 특히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직업 분리를 철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위원회는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모니터링 하고, 기업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전일제 및 정규직 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부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정규직을 확대하도록 촉구함.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들의 실행을 요청함. 위원회는 현존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과 여성들이 그들의 노동권리 침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구제절차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이의 인지를 통해 여성들이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효과적인 방안들을 통해 가정과 직업상의 책임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간에 가사와 가족 책임을 분담하도록 촉진하도록 요청함.
29. 위원회는 많은 여성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직업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해야 하는 점과 20세에서 24세 여성들 사이의 높은 낙태율에 대해 우려함. 위원회는 또한 생명공학분야에서 여성 생식 보건과 권리에 대한 보호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함.
3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여성들의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함. 특히 20에서 24세까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및 생식 보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화하도록 촉구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생명공학 적용에 관련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한 여성 난자 기증 및 채

취를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의료의 질과 법적, 윤리적 기준의 준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권고함.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지체 없이 생명윤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임신 및 연구 목적으로 여성 난자를 기증 또는 채취하는 경우, 통지 및 자발적 서면 동의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요청함. 또한 여성과 보건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24호를 성 인지적 및 나이 인지적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틀로 활용하도록 요청함.

31. 위원회는 특정 여성 집단에서의 여성의 빈곤화에 대해, 특히 여성 가장가정의 빈곤함에 대해 우려를 표함.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가발전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 이행하기를 권고함. 또한 위원회는 시행된 방안들의 효율성을 모니터하고, 다음 정기보고서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33. 위원회는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 시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함. 이는 혼인 기간 중 축적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여성은 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나타난.
3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을 위한 협약 제16조와 위원회의 일반 권고 21호를 참고하여, 혼인 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민법을 검토, 개정하도록 권고함.
35. 위원회는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적 혼인 연령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최저 법적 혼인 나이가 여성은 16세, 남성은 18세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함.
36. 위원회는 협약 제 16조 2항과 위원회의 일반권고 21번,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법을 속히 개정하여 여성의 최저 법적 혼인 연령을 18세로 조정하도록 권고함.
3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협약 규정들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북경 선언과 행동강령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함.
38. 위원회는 또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협약을 충실히 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함. 따라서 위원회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협약의 조항들을 확실하게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보고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청함.

39. 위원회는 주요 7대 국제인권협약¹⁾ 준수가 모든 분야에서 여성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임을 인지함. 따라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 즉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재고 하길 권유함.
40. 위원회는 여성의 법적 평등 및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사항들을 알리고, 앞으로 취해야 할 필요 조치를 알리기 위해 현 권고안이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및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요청함. 특히 여성과 인권단체에 협약과 선택의정서, 위원회 일반 권고,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과 “여성 2000: 21세기의 성평등, 발전과 평화”가 주제였던 제23회 특별총회 결과를 널리 보급하기를 요청함.
4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 권고안에 대하여 협약 제 18조에 의거 2010년 1월 예정인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답변하기를 요청함.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

| 인 쇄 | 2009년 12월

| 발 행 | 2009년 12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0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98-01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